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북교육 2022-200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2.03.01. 개정판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조정 및 학교장 자체 해결을 적극 활용**하되 축소 ·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급적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 · 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
http://doran.edunet.net

【 목 차 】

Ⅰ.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확인 사항(학교용) ····· 6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8

1.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11
1-1.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 13
1-2. 학교폭력 사안조사 ····· 14
1-3. 성 관련 사안 처리 ····· 19
1-4. 소년 사건 처리 ····· 20
1-5.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및 회복(분쟁) 조정 ····· 21
1-6. 교직원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 24

2. 조치 결정 및 이행 ····· 27
2-1.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구성 ····· 29
2-2.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운영 ····· 31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39
3-1. 피해학생 보호 조치 ····· 41
3-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44

4. 불복 절차 ····· 51
4-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53
4-2.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55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 57
5-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및 삭제 ····· 59

Ⅱ.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 아동학대 사안처리 유의사항 및 징후 체크리스트 ····· 67, 69

1.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처리 ····· 65
1-1. 아동학대(범죄)의 이해 및 신고 절차 ····· 71
1-2. 아동학대 사안 처리 ····· 76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 79

Ⅲ. 관련 서식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 85
② 분리 의사 확인서 ····· 86
③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보고서 ····· 87
④ 중대사안 보고 요지 ····· 88
⑤ 긴급조치 보고서 ····· 89
⑥ 피·가해·목격 학생 확인서 ····· 90
⑦ 보호자 의견서 ····· 91
⑧ 사안조사 보고서 ····· 92
⑨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 ····· 93
⑩ 심의결과 보고서 ····· 94
⑪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 95
⑫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 96
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97
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 98
⑮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99
⑯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공문 · 100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서 ··· 101
⑰-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4
⑱ 심의위원회 위촉 동의서(서약서) ···· 105
⑲ 심의위원회 위촉장 ····· 106
⑳ 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 107
㉑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 ····· 108
㉒ 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 확인서 109
㉓ 서면 진술(의견)서 ····· 110
㉔ 기피 신청서 ····· 111
㉕ 심의(소)위원회 등록부 ····· 112
㉖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 113
㉗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서 ····· 114
㉘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 115
㉙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유보 통보서 116
㉚ 심의위원회 조치이행 요청 공문 ··· 117
㉛ 조치사항 미이행 명단 보고 공문 · 118
㉜ 학생 특별교육 신청 공문 ····· 119
㉝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동의서 ····· 120
㉞ 특별교육 신청서 ····· 121
㉟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 신청 공문 122
㊱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 신청서 ··· 123
㊲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 124
㊳ 회복(분쟁)조정 신청서 ····· 125
㊴ 학생(전학, 퇴학)재심 청구서 ····· 126

< 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련 서식 >

Ⓐ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 127
Ⓑ 출결인정 내부결재 기안문 ····· 128
Ⓒ 비밀전학 협조 요청 공문 ····· 129
Ⓓ 비밀전학 시행 내부결재 기안문 ··· 130
Ⓔ 비밀전학 시행 공문 ····· 131
Ⓕ 등교학습 신청서 ····· 132
Ⓖ 등교학습 의견 제출서 ····· 133
Ⓗ 등교학습 의견 요청서 ····· 134
Ⓘ 등교학습 지원 요청 공문 ····· 135

Ⅳ. 부록

1. 심의위원회 회의록 시나리오 ····· 139
2. 법률 및 시행령 ····· 157

I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확인 사항(학교용)

학교명	00학교	학교	(성명)	교육(지원)청	(성명)
	00학교		(연락처)		(연락처)
사안 유형		발생 일시	2022.00.00.( )	접수 번호	2022-00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학교 초기 대응	1.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확인	☐ 접수 ☐ 미접수 ☐ 분리 시행 ☐ 분리 미시행 ☐ 학교장 보고 ☐ 학교장 미보고 ☐ 보호자 통보 ☐ 보호자 미통보
	2. 전담기구 구성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 학부모 1/3이상 위촉
	3. 사안조사 실시 여부 확인	☐ 실시 ☐ 미실시
	4. 학교장 긴급조치 확인	☐ 피해학생: 1, 2, 6호 ☐ 가해학생: 1, 2, 3, 5, 6호
	5. 회복조정 신청 확인	☐ 신청 (신청일:)
	6. 학교폭력 사안보고 확인(48시간 이내)	☐ 보고 ☐ 미보고
사안 처리 결과	**1. 학교폭력 아님 사안인 경우**	
	- 학교폭력 아님 사유	☐ 오인신고 ☐ 안전사고 ☐ 기타( )
	- 담임교사 해결 내부결재 확인	☐ 내부결재일: 2022. 00. 00. ☐ 미결재
	- 교육지원청 보고 확인	☐ 최종보고일: 2022. 00. 00. ☐ 미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 경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관련	☐ 개최일: 2022. 00. 00. ☐ 미개최
	-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서류 확인	☐ 사안조사보고서 ☐ 자체해결 요청서 ☐ 심의결과보고서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결과	☐ 충족 ☐ 미충족
	- 교육지원청 보고 확인	☐ 최종보고일: 2022. 00. 00. ☐ 미보고
	3.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인 경우	
	-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확인	☐ 긴급조치보고서 ☐ 사안 확인서 ☐ 보호자 의견서 ☐ 사안조사보고서 ☐ 심의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보호자(담임) 의견서, 탄원서 등*)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개최요청일: 2022. 00. 00.

조치 이행	1. 심의위원회 개최일	□ 개최일: 2022. 00. 00.
	2.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조치유보 결정 여부	□ 피해학생: 1호 00회기 등 □ 가해학생: 4호, 00시간, 5호 00일 등 - 추가 특별교육: *학생 00시간, 보호자 00시간* □ 조치결정 유보: *경찰조사, 회복조정 진행 등* - 유보일: 2022. 00. 00.
	3.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요청일	□ 요청일: 2022. 00. 00.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확인	□ 기재 □ 미기재 □ 기재일(2022. 00. 00.)
	5.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 확인	□ 기록 □ 미기록
	6. 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관련 - 3개월 이내 미이행 학생 명단 보고 - 미이행에 따른 가중조치 부과 여부	□ 이행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단순거부(기피), 질병 등* □ 미이행 명단 보고 □ 미보고 □ 부과 □ 미부과 - 부과 조치:
	7. 행정심판 청구 여부 - 행정심판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변경조치만 정정, 기재일자 그대로)	□ 청구일: 2022. 00. 00. □ 결과: *인용, 기각, 각하* - 인용인 경우: *변경조치 기재* □ 정정일: 2022. 00. 00.
	8. 피·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완료보고	□ 최종보고: 2022. 00. 00.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접수)

↓

학 교

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 기록 ①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
-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②
- 학교장 긴급조치 ⑤
- 중대사안 유선(서면)보고 ④
- 교육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③

전담기구 사안조사 ⑥⑦⑧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or 회복조정 신청 ㊳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2주) ⑨⑩
※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⑭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일로부터 3주 이내 개최(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접수 → 사안검토(정리) → 개최 통보 → 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 결정통보서 송부 및 조치이행 요청 → 조치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확인 → 조치 이수 재안내

↓

조치 이행 요청 ㉚

학교

-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이행 확인(3개월 이내)

※ 행정심판 청구 확인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최종보고) ③

↓

조치 거부(기피)

- 교육지원청으로 학생 미이행 명단 보고 ㉛

조치 불복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및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치 이행 유보 가능
- 행정심판 결정(인용, 기각)

조치 유보 결정

심의위원회

- 회의 도중 양측이 ㊳ **회복 조정을 신청**한 경우
- 관련학생 주장이 상이하고 사안을 명백히 심의할 수 없는 경우(경찰조사 중)

※ 조치유보 결정을 한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재개최 ㉙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

동의

↓

학교폭력 아님 사안 처리 ⑪

↓

내부결재 종결

미동의

↓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⑭

학교폭력인 경우

↓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서면 확인** ⑨

✓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 심의** ⑩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발급 : 제출의 의미로 해석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기준 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

- **내부결재** (아래 서류 첨부)
  - · **사안조사보고서** ⑧
  - · **자체해결요청서** ⑨
  - · **심의결과보고서** 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③

※ 사안보고서 제출로 대신함

기준 미충족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⑭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3주 이내 개최)

※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⑬

↓

- 가해학생이 피해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새로운 사실(증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1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1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 초기개입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사안인지		학교장 긴급조치(필요시)		사안보고
- **신고접수대장 기록** ① -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②	▶	- 관련학생 안전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⑤ - 가해학생 조치 ⑤	▶	- **사안보고(48시간 이내)** ③ - 회복조정 노력 ㊳

가. 사안인지 : 신고접수대장 기록 후 보호자 통보(유선, 문자, 내교 요청 등)

학교장 보고(인지)	-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최대 3일 이내)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나. 사안보고 : 48시간 이내 관할교육지원청 서면보고(공휴일 미포함)

※ 언론보도 등의 중대사안인 경우 서식을 추가로 작성④ 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최초보고 ③	→	최종보고 ③		
		학교폭력 아님 종결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⑪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⑧⑨⑩	**심의위원회 개최** ⑭㉚
48시간 이내 서면보고		최초 보고된 사안만 최종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후 최종보고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후 최종보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 측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보고 절차 (FAX)	-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 동시 보고)** - **교육지원청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전라북도교육청	220-9411	**완주**	270-7639
학생인권교육센터	237-0120	**진안**	432-6337
전주	251-2031	**무주**	322-4649
군산	0303-0944-2769	**장수**	351-2718
익산	837-1682	**임실**	642-2723
정읍	533-5929	**순창**	653-1460
남원	631-4701	**고창**	561-5835
김제	540-2599	**부안**	581-1318

1-2 학교폭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가.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table>
<tr><td>구성권자</td><td>- 학교의 장(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운영계획 수립 필요)
※ 필요한 사항: 심의방법,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td></tr>
<tr><td>구성원</td><td>-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
<table>
<tr><td>전담기구 전체 구성원</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학부모 위원</td><td>1</td><td>2</td><td>2</td><td>2</td><td>3</td><td>3</td></tr>
</table></td></tr>
<tr><td>임기</td><td>- 교원은 재직기간을 활용하고 학부모 구성원 임기는 학교장이 정함(1년 권장)</td></tr>
<tr><td>학부모 추천방법</td><td>-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지명)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학부모를 학교장이 위촉
※ 학부모 추천 관련 내용 회의록 명시</td></tr>
<tr><td>학부모 여비</td><td>-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전담기구 운영계획에 포함)</td></tr>
<tr><td>역할</td><td>- 사안접수 : 신고접수대장 기록,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 분리 : 72시간 이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교사 포함) 분리
- 사안보고 : 관할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보고(중대사안 : 즉시 유선보고)
- 사안조사 : 관련학생 면담(조사), 보호자 의견 확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 객관적 요건 충족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최대 3주 이내)
-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 4호, 5호, 6호, 8호
<table>
<tr><td>1호</td><td>2호</td><td>3호</td><td>4호</td><td>5호</td><td>6호</td><td>7호</td><td>8호</td><td>9호</td></tr>
<tr><td>서면 사과</td><td>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td><td>학교에서의 봉사</td><td>사회 봉사</td><td>특별 교육</td><td>출석 정지</td><td>학급 교체</td><td>전학</td><td>퇴학</td></tr>
</table>
※ 1호, 2호, 3호, 7호는 별도의 전담기구 심의 없이 절차에 따라 졸업과 동시 삭제</td></tr>
<tr><td>유의사항</td><td>- 상담(보건)교사 등이 없는 경우 : 다른 교사를 전담기구로 구성할 수 있음
- 회의 정족수 :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원을 소집하여 개최
- 학부모 구성원 회의 참석 :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비밀유지 : 관련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td></tr>
</table>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가.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0조

사안조사 ⑥⑦⑧	▶	회복조정 노력 ㊳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 사실 확인서 확보 - 정보 수집 및 요구사항 확인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 **회복조정지원단 지원 요청 등**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⑧⑨⑩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⑭

나. 확인사항

사실 확인	- 관련학생 대상 면담 실시(사안 확인서 등 확보), 보호자 의견서(선택)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정보수집	-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 정황파악: 피·가해학생의 현재 상태 및 대응능력, 힘의 불균형 등을 파악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욕구 및 방향성 파악
회복조정	-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조정의사 확인 및 회복조정 지원 요청
보고서 작성	- 사안 확인서, 면담일지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사안 확인서 및 관련 보고서 등은 직접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
자료 요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 관계기관 :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

다. 사안조사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 피해의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라.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7조의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 행위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기타	- 교사·주도·집단 행위 및 폭력서클 가입 여부 등 - 정신(신체)상의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3. 코로나 19 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

<table>
<tr><th>단계</th><th colspan="3">주요내용</th></tr>
<tr><td>기본
원칙</td><td colspan="3">-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중대본)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
- 사안처리 절차 진행 시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최우선하되, 관련학생의 기본 진술 기회 및 권리 등을 보장</td></tr>
<tr><td rowspan="5">사안
조사
단계</td><td>대상</td><td>사안조사 방법</td><td>증빙자료</td></tr>
<tr><td>확진학생</td><td>- 사안조사 유예
- 회복상태 고려</td><td>- 입원치료통지서</td></tr>
<tr><td>가족(동거인)이나
본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td><td rowspan="2">-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조사 실시
(영상, 전자우편,
전화 등)</td><td>- (가족, 동거인)격리 통지서</td></tr>
<tr><td>의심 증상 학생</td><td>- 검사 실시한 경우(결과 자료 제출)
- 검사 미실시한 경우(학부모 의견서 제출)</td></tr>
<tr><td>전교생 등교중지</td><td colspan="2">- 사안조사 유예, 해제 이후에 실시</td></tr>
<tr><td>조치
이행
단계</td><td colspan="3">- 밀접 접촉 최소화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치 이행
- 확진, 의심 증상, 격리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료(해제) 이후 조치 이행
※ 학교에서는 전담관리인으로 지정된 교직원이 매일 유선으로 학생의 건강 상태 확인
- 외부기관에서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사전 검토 실시
-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외부기관에서 조치 이행이 불가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관련 조치를 변경하여 내부결재 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td></tr>
<tr><td>협조
사항</td><td colspan="3">-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은 상황 종료 시 적용 중단
- 코로나19에 인한 상황 변동에 대해 관련학생 측에 충분히 설명 및 사전 동의 필요
※ 변경된 절차 적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td></tr>
</table>

4.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 분리

가. 분리 절차 및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 2

분리 시행	-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최대 3일 이내) ※ 이하 '가해학생'-'피해학생'은 '가해 추정학생'-'피해 추정학생'을 의미함

사안 인지(접수)	▶	분리방법 결정	▶	가해자 분리
- 피해학생 반대의사 확인 ②		- 분리 공간, 기간 등		- 최대 3일 이내 -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유선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학생(교사)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나. 주요내용

취지	- 처벌적 조치가 아닌 관련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
분리 시점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신고, 접수)한 때
기간	- 최대 3일 이내(시행일 당일부터 분리기간에 산입되며 휴일도 분리기간에 포함)

시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 일요일
기 간	월~수	화~목	수~금	목~토	금~일	다음주 월~수

방법	- 학교 내 별도 공간 및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분리 ※ 학급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학생 의사 및 관련학생 동선을 고려하여 시행
쌍방 사안	-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학생 모두 즉시분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결 사항	-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분리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습권 보장	-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지원 방안 마련
학교장 긴급조치	- 분리 기간 중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가 실시되는 경우 분리 종료 - 분리 기간이 종료된 후,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긴급조치 시행 가능
분리조치 예외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5.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전까지 긴급조치 가능

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⑤

심의위원회 보고	- 피해학생 긴급조치를 내린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긴급조치 유형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⑤

심의위원회 추인	-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내린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추인 필요 ※ 추인이 되지 않아도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문제되지 않음		
생활기록부 기재	- 심의위원회 추인을 거쳤으므로 생활기록부에 긴급조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긴급조치 유형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 제5호와 제6호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가능(출석 미인정)		
우선 출석정지 조치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함 -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출석정지 기간 중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함		
긴급조치 취소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경우		
거부·회피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가능(생활교육위원회)**		

1-3 성 관련 사안 처리

1. 성 관련 사안처리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0조의2,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원칙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엄정 대처**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적 방안 마련**

가. 신고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 (중략)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0조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1) 신고방법 :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참고	-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구두로 상담한 경우와 117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에 유선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 ※ 단, 구두로 상담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등의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함

나. 유의사항

1) 피해학생 측이 신고를 원하지 않아도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학생 측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신고의무 이행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동일하나 피해학생 측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동성 조사자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창구 단일화)

4) 진술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5) 가해자와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에 철저

6)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자문 등의 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필요

1-4 소년 사건 처리

1. 소년사건 처리 대상 및 절차

가. 소년 사건 처리 대상

연령		보호처분	형사 처벌
10세 미만		불가	
촉법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적용	불가
범죄소년	14세 이상 ~ 19세 미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용	

나. 소년 사건 처리 절차

경찰의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부 법원 결정
- 사건조사 및 송치	→	- 교육 및 소년부 법원 심리대기 **(위탁교육기관, 수업일수 인정)**	→	- 보호 처분 결정

1) 소년보호기관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2) 소년부 법원 결정 : 보호처분(**범죄기록 ×**) ↔ 형사처벌(소년교도소, 전과기록)

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보호 처분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6호 :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6월+6월)
	2호 :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7호 :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6월+6월)
	3호 :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월 이내)**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월 이내)**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1년)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부가처분 : 대안교육 또는 상담, 교육,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

2. 유의사항

가.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일수가 인정되는 경우

1)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교육 기관으로 1개월 이내 수업일수 인정(학교로 공문 발송)

2) 소년부 법원의 조사(심리)기간 및 보호처분 8호 조치에 따른 소년원 기간은 수업일수 인정

나. 보호처분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교한 경우

1)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소년원만 수업일수 인정(서울, 전주, 안양 소년원 → 중·고 교육과정 운영)**

※ 학적, 출결, 성적, 비교과 영역 등 : 소년원 학교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

1-5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및 회복(분쟁) 조정

1.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요건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여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사안 인지(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1주 연장 가능)

가.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① **전담기구 사안 조사**
- 피해상황이 있고

② **피해학생 서면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③ **전담기구 요건 심의**
- 경미한 사안에 해당

→ **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 **사안조사보고서** ⑧
- **자체해결요청서** ⑨
- **심의결과보고서** ⑩

내부 결재 → **최종 보고** ③ → **학생 보호자 통보**

→ **미 충족** →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나. 경미한 사안 요건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안 요건에 해당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피해학생 측이 인정한 경우도 경미한 사안 요건으로 봄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다. 유의사항

1)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2)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사안은 원칙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불가(**사전에 충분히 설명**)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⑬

사유	- 피해학생의 재산상 피해 복구(신체, 정서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며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⑫

4) 긴급조치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시,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내부결재)

5) 동일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가능**

※ 단, 가해가 한 명이고 피해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 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가능

라. 참고사항

1)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에 개최 취소 의사 서면 제출 ⑮	→	개최 취소 요청(공문) ⑯	→	공문접수 후 개최 취소

2)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경우

참고	-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 가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학교의 결정에 따름

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재발방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유형 : 상담, 캠페인 활동, 관계개선 의지와 당사자 동의 여부에 따른 회복조정 등

2. 회복(분쟁) 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29조

회복 조정	- 교육공동체 간에 발생한 각종 갈등과 분쟁을 관계개선과 회복적 관점으로 접근

가. 개요

1) 대상 : 교육공동체 간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 및 분쟁

2) 신청기관 및 방법 : 각급학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신청 ㊳

각급학교	회복조정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심의위원회	당사자 조정의사 확인 → 조치유보 결정 →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3) 회복조정 기간

-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경우 : 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참고	- 회복조정 진행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일이 도래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심의위원회는 회복조정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조치 유보 결정 ㉙ - 이때부터 1개월의 회복조정 기간이 부여되며 조정이 종료되면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한 후, 회복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학생 조치 및 학교장 자체해결 권고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나. 회복조정 신청 이후 절차

신청기관 방문	예비조정	본조정	결과보고	사후방문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1) **신청기관 방문** : 당사자 동의 확인, 사안 및 조정방향 협의 등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사안공유 및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

2) **예비조정(사전대화모임)** : 당사자별 사전대화 모임을 통해 쟁점 및 요구사항 파악 등

3) **본조정(본대화모임)** : 당사자별 쟁점 및 요구사항 공유, 합의문 작성 등

4) **결과보고** : 해당 조정위원이 도교육청으로 회복조정결과보고서 제출

유의 사항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결과보고서 송부(담당자 외 열람금지) - 회복조정을 위해 조치유보 결정을 ㉙ 한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여야 함 ※ 회복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학생 조치 및 학교장 자체해결 권고 등을 결정할 수 있음

5) **사후방문** : 조정위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해당학교 방문(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교육지원청 방문(조정결과 공유 및 절차 안내 등)

1-6 교직원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1. 교직원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50조 (조사내용 : 제9조~제27조에 따른 학생의 권리 침해 사안)

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 ↓

학교 초기대응	학생인권교육센터 사안 조사
- 신고접수대장 기록 ①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부서 신고 -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72시간 이내) ② - 학교장 긴급조치 ⑤ - 중대 사안 유선(서면)보고 ④ - 교육지원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안 보고 ③ (48시간 이내) ※ 아동학대(78쪽 참조)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처리 절차를 우선 적용하되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초조사 실시 • 전화통화조사, 관련 자료 조사 • 관련자 면담 및 학생전수조사 등 -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초조사 결과 통보 • 직권조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0조)
- 학교 자체 보호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내부결재 ⑫	- 직권 조사 ※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제신청이 어려운 경우 - 특별인권교육 (학생, 교직원)	- 직권조사 심의 및 의결 - 권고 결정 통보 • 전라북도교육감 • 해당기관(학교)장 • 관련교직원, 피해학생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문의처 : 학생인권교육센터 063-237-0355~8

2.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 인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50조 (조사내용 : 제9조~제27조에 따른 학생의 권리 침해 사안)

학생 성 인권 침해 사안 발생

↓ ↓

학교 초기대응	학생인권교육센터 사안 조사
- 신고접수대장 기록 ①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부서 신고 -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72시간 이내) ② - 학교장 긴급조치 ⑤ - 중대 사안 유선(서면)보고 ④ - 교육지원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안 보고 ③ (48시간 이내) ※ 아동학대(78쪽 참조)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처리 절차를 우선 적용하되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초조사 실시 • 전화통화조사, 관련 자료 조사 • 관련자 면담 및 학생전수조사 등 -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초조사 결과 통보 • 직권조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0조)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내부결재 ⑫	- 직권 조사 ※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제신청이 어려운 경우 - 특별인권교육 (학생, 교직원)	- 직권조사 심의 및 의결 - 권고 결정 통보 • 전라북도교육감 • 해당기관(학교)장 • 관련교직원, 피해학생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문의처 : 학생인권교육센터 063-237-0355~8

2

조치 결정 및 이행

2-1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구성

1. 심의(소)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13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14조

지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자격	①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담당 국(과)장 ②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③ 학교폭력(생활지도)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④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관할구역 경찰공무원 ⑤ 학교의 조교수 이상,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재직 또는 재직하였던 자 중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⑥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⑦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⑧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심의위원회 구성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인원	학부모 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교육장	위촉(임명)	10~50명	1/3 이상	2년

※ 학부모 위원 :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해당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소속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1)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절차 및 방법

위임사항	- 관련학생에 대한 보호,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긴급조치 관련 사항 등
위임의 효력	- 2년(2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재구성 → 전체회의 개최 → 위임사항 의결)
위임 방법 (전체회의)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의결(회의록 기록) ※ 교육장이 정한 소위원회 운영 규정도 함께 보고
유의사항	- **연임된 위원** : 위임의 효력이 2년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통해 위임사항 재의결 - **위원의 변경(추가)** : 위원이 추가(변경)된 경우에도 위임사항은 유지(내부결재)

※ 소위원회가 없는 지역은 전체회의 개최 및 위임사항 의결 절차 생략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위원장** : 교육장이 임명(위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 **임기** : 2년(연임 가능),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간사**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 지명

나.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1) **대상** : 관련학생이 각각 다른 관할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공동으로 구성

2) **구성** : 교육지원청간 협의를 거쳐 10~50명 이내로 구성(1/3이상 학부모)

※ 공동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불필요(10~15명 내외로 구성 권장)

3) **유의사항**

역할 분담	-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
심의 방법	- **학습권 침해 최소화 및 사안의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보고	- 주관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㉖
의결서 작성(통보)	- 주관교육지원청에서 의결서 작성 후, 해당교육지원청으로 통보 ㉗
결정 통보	- 조치 의결서, 결정 통보서 등을 교육지원청별로 내부결재한 후, 결정 통보

※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경우, 관련학생 모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 소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2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인원	학부모
소위원회	교육장 ⑱⑲	지명	5~10명	1/3 이상

1)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심의 사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긴급조치 관련 사항 등

2)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심의위원회 보고**

- 지역별 심의건수를 고려하여 전체회의 개최 후 일괄 보고(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등)

3) **교육장이 정하는 소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소위원회 구성	- 5~10명 이하로 구성(심의위원회 학부모 구성 비율 준용)
소위원회 위원(장)	-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여러 소위원회 겸임 가능)
간사	- 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 간사 1명을 지명
위원장 공석	- 교육장(소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병합 또는 분리	- 배당된 사안에 대하여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심의 가능

라.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4조 제4항

1) 교육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

사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2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운영

1. 심의(소)위원회 개최 준비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13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학교		교육지원청						
개최 요청 공문 발송 ⑭	→	공문 접수	→	사안 검토	→	심의(소)위원회 배정	→	심의(소)위원회 소집

가. 개최 요청 공문 발송 및 관련 서류 제출(아래 서류 첨부)

필수서류	- 긴급조치 보고서, 사안 확인서, 사안조사(심의결과) 보고서 ⑤⑥⑧⑩
선택 서류	- 보호자 의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서류 등 ⑦⑰⑰-1 ※ 학기 초 개인정보제공 ⑰ 에 일괄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⑰-1 생략

※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보완)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사안접수(검토) 및 소위원회 배정

1) 사안검토 및 쟁점 분석,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안건 배정 등

다. 심의(소)위원회 소집

1) **심의위원회 개최기한**

- 학교의 개최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3주 이내 개최(1주 연장 가능)**

연기 가능	- 학사 일정, 새로운 증거 발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학교의 개최 요청 공문을 기점으로 기산

2) **개최요청 취소 절차**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에 개최 취소 의사 서면 제출 ⑮	→	개최 취소 요청(공문) ⑯	→	공문접수 후 개최 취소

3) **개최통지 방식** ㉑㉒㉓

통보 기한	- 학교 : 공문으로 통보 - 관련학생 및 보호자 : **충분한 기간(10일 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
통보 방법	-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식 활용 가능
기재 내용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 내용 등을 기재 -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반드시 포함 ㉓ **-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안내(5일 전까지 요청 의사 확인서 제출)** ㉒

2. 심의(소)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13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가. 심의(소)위원회 진행 절차(회의록 시나리오 139쪽 참조)

개회(사안보고) 주의사항 전달 → 피해추정 의견 청취 질의응답 → 가해추정 의견 청취 질의응답 → 참고인(전문가) 의견 청취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의결 →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여부 의결 → 조치결정 통보 (학생 또는 보호자) → 조치이행 요청 (학교 공문)

나. 심의(소)위원회 개최와 의결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가 됐다면 회의 종료 시까지 과반수를 유지하여야 함

다.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

1) **의견 청취** : 해당교원, **전문가**, 참고인 등을 출석(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취

- 전문가 :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아동학대, 성 사안 및 사이버 폭력 분야의 전문가

2) **자료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가능(공문)

※ 경찰 조사로 조치유보 결정을 한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

학교폭력 정보공유 서식(경찰청 제공)

대상학생	성명	최OO	생년월일	0000.00.00.	학교명	OO고등학교
사건 개요	<예시> 최OO 학생은 '22.00.00. 00:00경 OO시 소재 OO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학생 김OO을 폭행한 사안임					

수사 진행사항 (해당항목에 "○"표기)	수사 중	불송치	검찰청 송치	소년부 송치	기 타
			○		
			OO지검 (00.00.)	OO가정법원 (00.00)	※ 관련사항 간략기재

비 고	- 필요 시 선도프로그램, 전문가 참여제 등 진행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등 기재 ※ <예시> ○○ 경찰서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00.00. ~ 00.00.) - 수사 진행사항별로 특별히 기술 가능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3)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대상	- 피해학생의 요청과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㉑		피해학생 → 심의위원회 ㉒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전문가 의견 청취제도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요청 의사 확인서 제출	→	전문가 의견 청취방법 결정 (서면 또는 출석) 청취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청취 방법을 결정하고 회의 시작 시, 다른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진행

-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

방 법	-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학생 : 해당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심리상담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 : 심의위원회 소속(지정) 상담 전문가 적극 활용

- 유의사항

전문가 수당	- 외부기관 및 학교 소속 전문가는 **심의위원에 준하는 수당 지급** ※ 위(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수당은 지급 불가
쌍방 피해 주장	-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 학생 모두로부터 전문가 요청 의사 확인
의견 청취 불가	- 전문가 의견 청취 신청 후, 천재지변 등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여야 함

라. 심의 방식

원 칙	- 피·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면 심의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다양한 심의 방식 활용 가능

1)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심의위원회 참여 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2) **대기실 분리 운영** : 관련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및 불필요한 접촉 방지

마.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㉔

원 칙	- 심의위원회 회의 시작 전 제척, 기피,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록에 명시 - 기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정회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속개

마. 수당과 여비

지급	-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3. 조치 결정 이후의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19조

결정권자	- 교육장(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집행)

가.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 위원회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조치의결서 ㉗ 작성 및 송부 (집행 요청)		조치의결서 결정통보서 내부결재 ㉗㉘		결정통보서 결정일자 기재		조치결정 통보 - 학생(보호자) ㉘ 조치이행 요청 - 학교 ㉘㉚

1) **조치 의결서 작성 및 송부** : 해당조치 집행 요청(교육장)

2) **내부결재** : 조치 의결서와 결정일자가 미기재된 결정통보서 내부결재

3) **결정일자 기재** : 내부결재 일자를 결정통보서에 기재

※ 내부결재 일자와 결정통보서에 기재된 결정일자가 동일하여야 함(생활기록부 기재일자로 활용)

4) **조치결정 통보(학생 및 보호자)** ㉘

통보기한	- 피해학생 7일, 가해학생 14일 이내 서면 통보(당사자 동의에 따라 전자문서 가능)
통보내용	-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 불복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안내(결정통보서 작성자 명시)
다수학생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 결정을 기재하여 결정 통보

5) **조치이행 요청(학교장)** ㉘㉚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19조

-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 통보 및 조치이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조치 이행 후,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③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거부, 기피 등) 교육지원청에 미이행 명단 보고

6)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거부·기피 등)**

교육지원청	→	학교				
공문으로 조치 이행 요청 ㉚	→	이행 독려	→	이행	→	교육지원청으로 최종보고 ③
				3개월 이내 미 이행	→	교육지원청으로 미이행 명단 보고 ㉛

- 교육지원청은 **21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안내 사항	- 심의위원회 선도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 -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

나.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심의위원회 보고

1)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사항을 위임받았으므로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지역은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 생략

일괄 보고	- 심의건수를 고려하여 전체회의 개최 후 일괄보고(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개최)

다. 비밀 유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1)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 누설 금지

2) **비밀유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의 범위	- 관련학생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 관련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라. 회의록 작성 및 정보공개 청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회의록 작성	-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회의록을 작성한 후, 비 전자 문서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는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 생산 및 공개 의무 없음 -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
회의록 공개	-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공개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 결정기간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 연장기간 :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연장사유 문서 통지)
공개범위	- 피·가해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공개 가능정보	- **회의록 외에 공개 가능한 정보 : 본인의 최초 사안확인서 등** ※ 공개불가 자료 : 타인의 사안 확인서, 사안조사(심의결과) 보고서 등

4. 코로나 19로 인한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단계	주요내용
기본 원칙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중대본)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 - 사안처리 절차 진행 시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최우선하되, 관련학생의 기본 진술 기회 및 권리 등을 보장
사안 심의 단계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운영 방법 변경 가능) ※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교육장 승인 후, 화상회의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회의실 내 방역 강화 조치 우선 시행(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 확진 또는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자(의심증상자) 참석중단 안내 조치 - 확진, 의심 증상, 격리 등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 기회 부여 ※ 서면, 영상 등을 활용하되,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 유보 결정 - 확진자 발생으로 기관 전체가 폐쇄될 경우, 화상회의 및 대체시설 등 마련 운영 - 확진 또는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위원은 대체 소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 마련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는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
협조 사항	-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안처리 변경 운영 가능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방안은 상황 종료 시 적용 중단 - 코로나19에 인한 상황 변동에 대해 관련학생 측에 충분히 설명 및 사전 동의 필요 ※ 변경된 절차 적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5. 분쟁(회복) 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학교에서 신청하는 회복조정 절차는 22쪽 참고

가. 회복조정지원단 운영

1) 대상 : 심의위원회 개최 중, 양측의 동의하에 조정 신청이 된 경우

2) 조정기간 : 당사자의 조정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조정신청 절차

당사자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회복조정지원단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조정 신청		조치유보 결정 ㉙		회복조정 신청 ㊳		교육지원청 방문(협의)		조정개시 통보

- **조정 신청** :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 유보 결정 ㉙㊳

※ 회복조정 진행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이 도래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서면의견(회복조정 진행 등)으로 조치 유보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청 공문 발송** :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회복조정 신청 공문 발송

※ 분쟁(회복) 조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자체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방문** : 사안내용, 특성, 쟁점사항 및 조정위원 배정 등 협의
- **조정개시 통보** : 관련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안내(배정위원, 협조사항 등)

4) 조정 진행 절차

당사자별 예비조정	→	본 조정	→	기관방문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 재개최	→	조치결정 통보

- **당사자별 예비조정** : 갈등 및 쟁점(요구)사항, 책임의 의지 등 파악
- **본 조정** : 갈등 및 쟁점(요구)사항 공유, 합의문 작성 등
- **기관방문** : 조정 결과 협의 및 사후절차 안내를 위해 교육지원청 방문
- **결과통보**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으로 조정결과통보서 송부(공문)
- **심의위원회 재개최** : 조치유보 결정을 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 재개최

※ 조정 결과에 대해 조정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도교육청에서 수당 지급)

- **조치 결정 통보** : 관련학생 조치 결정 후, 해당학생(보호자) 및 학교 통보

결정사항	- 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학생 조치 및 학교장 자체해결 권고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나. 협조사항

1) **장소 협조** : 원활한 조정활동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의 장소 협조 등

2) **자료 공유** : 사안 내용 및 쟁점, 관련 자료 공유 협조 등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1 피해학생 보호 조치

1.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통보기한	-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함**

가. 조치 유형

1호	2호	3호	4호	6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 **5호 전학권고** : 삭제(2012.3.21.)

2)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병원, 법률, 전문기관 등에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

3) **학교장 긴급조치 : 1호, 2호, 6호 → 심의위원회 보고** ⑤

나.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1) 출석일수 포함 :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 **인정 범위** :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진단서, 소견서 등 고려)
-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 결석기간 동안 학습자료 제공 및 가정학습 지원 방안 마련 등

2) 불이익 금지

- **성적 및 각종평가** :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 및 각종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결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3) 치료비 우선 지원시스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 **지원 범위 및 인정기간** : 피해학생의 상해 및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범위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 병원 심리치료 비용 및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관의 비용	2년 (1년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진료) 비용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시설, 집, 상담실 등)	30일

※ 병원은 기관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상담기관은 반드시 교육감이 정한 기관만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

지원 절차	① 피해학생 측이 해당기관에서 발생된 **소요 비용 우선 결제** ② **해당 학교장 또는 보호자가 신청** - 오프라인 : 청구서 작성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등기, 직접 방문 등) -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신청 http://www.schoolsafe.or.kr -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 사본,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피해학생 확인서(결정 통보서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미개최 확인서)** ③ 학교안전공제회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④ 가해학생 측에게 지급 결정된 금액(내용) 안내 및 **지급된 비용 상환청구** ※ 문의처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063-239-3777 ~ 3783)

4) 심리상담 지원

- **대상 :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및 보호자(가족) 등**
- **지원 절차** :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

학교 ㉟㊱	→	상담기관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 후 상담기관으로 송부		**심리상담 실시 후, 해당학교로 상담 확인증 송부**

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절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학생 전학 요청 → **학교장 배정 요청** → **교육장 학교 배정**

라.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장애 학생	- 신체, 정신,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인정한 특수교육대상자**)

1) 특수교육전문가 지원 :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견 및 진술 조력

※ 특수교육전문가 : 특수교육 교원(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등을 말함

2) 가해학생 특별교육 :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교육 권장

마.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지원

1) 문화(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 필요

2) 통번역 및 교육 전문가 지원 : 사안처리 대응 및 의견 진술 조력

바. 유의사항

1)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자(교사 포함)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함(최대 72시간 이내)**

2)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사 및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⑫ 첨부 후 내부결재)

사.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전문상담심리기관 현황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9항

1) 대상 :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및 보호자(가족) 심리상담(검사) 지원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전담기관 : 1기관(무료상담)**

지역명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전주	마음치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4	063-271-0117

- **피해학생 전문상담심리기관 : 19기관(도교육청 심리상담 비용 지원)**

비용	- 심리상담 회기당 6만원, 심리검사 25만원(종합심리검사 기준) 지원		
신청 절차	학교 → 상담기관 ㉟㊱	→	상담기관 → 학교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심리상담 이수 확인증 송부**

지역명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전주	**마음편한 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전주	**마음뜰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33-1, 2층	063-232-2273
전주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8, 701호	063-223-0075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063-287-1101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63-228-0304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군산	**군산 본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축동안3길 24, 201호	063-465-2592
군산	**초록숲 인지언어심리상담**	군산시 대학로 245, 202	063-465-9999
군산	**문현정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상지곡안4길 47-1, 2층	010-8888-7026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63-854-3004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105/102	010-7343-9775
남원	**(유)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	남원시 대교 2길 29, 1층	063-636-7672
남원	**같이심리상담센터**	남원시 동문로 83, 101동 101호	063-626-8893
완주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91 2층	063-903-6085

3-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통보기한	- 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함**

가. 조치 유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1) 학교장 긴급조치 : 1호, 2호, 3호, 5호, 6호 조치 → 심의위원회 추인 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하는 경우 :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가능(내부결재)

※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며 5호와 6호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조치 : 3호, 4호, 5호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처리	무단결석 처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나. 유형별 조치 부과 방법 ㉘

1) 완료기한 및 기간 명시 : 1호, 3호(완료기한 명시), 2호(이행 기간 명시)

1호, 3호	2호 조치
조치이행 완료기한 반드시 명시(00.00.까지 이행)	조치이행 기간 명시(00.00.~00.00.까지)

2) 일 단위 조치 : 5호(특별교육이수), 6호 → 00일

3) 시간 단위 조치 : 3호, 4호,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 → 00시간

4) 회기 단위 조치 : 5호(심리치료), 추가되는 심리치료 조치 → 00회기

다. 유형별 조치 세부내용

순	유형	내용
1호	**서면사과**	-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적는 조치 ※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원, 소년원 입교 등)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격리 조치 아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 방법을 선정 - 유형 : 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원, 소년원 입교 등)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4호	**사회봉사** (출석인정)	-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의 봉사 - 1365 나눔포털, VMS, DOVOL 등에 등록된 기관 활용
5호	**특별교육** (출석인정) **심리치료** (출석인정)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동시에 내릴 수 없음 ※ 심리치료 :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심리상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6호	**출석정지** (출석미인정)	-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함(시험기간 등 제외)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니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출석정지 기간 내에 자율학습, 가정학습, 위탁교육 등 가능하나 출석 미인정 결석 처리됨
7호	**학급교체**	- 격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호	**전학**	-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 요청 - 교육장은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원칙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분리 배정 ※ 피해학생을 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을 후 배정함 - **참고사항** 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학교폭력 강제전학 배정은 예외) ②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 불가 ③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 취소 및 재배정 요청 불가 ※ 2022년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 참고
9호	**퇴학**	- 해당학생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 마련

라. 유의사항

1) 3개월 이내 이행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명단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조치 이행 요청	→	**학교** 이행 독려	→	**이행**	→	**교육지원청으로 최종보고**
				3개월 이내 미 이행	→	교육지원청으로 미이행 명단 보고 ㉛

- 교육지원청은 **21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교육지원청 안내 사항	- 심의위원회 선도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2) 학적 변동의 제한

-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 제한

예 외	- 학교장이 성폭력 등 분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3)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 기록 및 보관 ㊲

- 학적 변동 시 전출교는 전입교에 관리(유보)대장을 송부 → **전입교에서 비공개 문서로 관리**

4) 외부기관에서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 학교장 책임 하에 조치 변경사항을 내부결재 후 학교 자체 시행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내실화된 교육(선도) 프로그램 마련 등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생 특별교육	-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함

가. 가해학생 특별교육 ㉜㉝㉞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1) 가해학생 조치사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 특별교육 신청 절차

학교 ㉝	→	학교 ㉞	→	학교 → 특별교육기관 ㉜
특별교육 보호자 동의서 수령		**특별교육 신청서 작성**		**특별교육 신청공문 발송**

3) 가해학생 특별교육 유형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 5호 특별교육 조치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조치 기간의 제한이 없는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됨

- **추가되는 특별교육** : 2~4호, 6~8호 조치를 받는 경우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 원 조치에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은 권장 시간이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 **보호자 특별교육** :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부과

예시	- 4호 사회봉사 조치와 5호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 - 5호 조치 특별교육과 별개로 4호 조치에 특별교육을 추가하여야 하나 조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4호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시간을 5호 특별교육 시간에 포함**하여 내릴 수 있음

-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 및 보호자 특별교육 권장시간**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4시간 이내			5 ~ 8시간 이내		

※ 심의위원회는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 기간을 늘릴 수 있음

나.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부과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교육 이수 가능 www.parents.go.kr (온라인 원격연수 시청 후, 교육 이수증 발급 후 제출)

1)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기간 : 3개월 이내 이수

심의위원회	→	교육장 → 보호자	→	학교장 → 보호자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결정		서면통보		시간 및 장소 안내

2) 3개월 이내 미이수한 경우 : 미이수 명단 보고 및 특별교육 재안내

학교장 →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미이수 보호자 명단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교육 재안내(서면) ※ 1개월 이내 특별교육이수	→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불응할 경우, 다음날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3)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교육 불응의 타당한 이유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검토 후 미부과로 결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	- 위 미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의제기 가능

다. 특별교육기관 현황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9항

1) 지자체 운영 전문기관

지역명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전주	전주시 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5	063-277-9890
전주	전북스마트쉼센터	전주시 완산구 현무 2길 25	063-288-8495~7
전주	전주완산청소년경찰학교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52	063-280-0335
군산	군산청소년경찰학교	군산시 팔마로 60	063-441-0143
익산	익산청소년경찰학교	익산시 무왕로 1415	063-830-0278
온라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On누리)	www.parents.go.kr	1899-0025

2) 성 관련 전문기관

지역명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	군산시 구영 7길 8	063-445-1366
익산	익산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익산시 인북로 187	063-834-1366
정읍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 상담소	정읍시 충정로 273	063-531-1366
김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익산	익산 여성의전화	익산시 익산대로 172-1	063-858-9191

3) 위(Wee)센터 : 학교 위(Wee)클래스 및 상담실도 특별교육기관으로 인정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전주 덕진	063-253-9214	완주	063-270-7640
전주 완산	063-253-9523	진안	063-430-6292
군산	063-450-2850	무주	063-324-3399
익산(초등)	063-852-4501	장수	063-350-5226
익산(중등)	063-850-8990	임실	063-640-3570
정읍	063-530-3082	순창	063-650-6320
남원	063-635-8530	고창	063-560-1612
김제	063-540-2551	부안	063-580-7448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명	전화번호	지역명	전화번호
전북	063-273-1411	진안	063-433-2377
전주	063-236-1388	무주	063-324-6688
군산	063-468-2870	장수	063-351-2000
익산	063-856-2008	임실	063-644-2000
정읍	063-531-3000	순창	063-653-4646
남원	063-633-1977	고창	063-563-6793
김제	063-544-1377	부안	063-581-5839
완주	063-291-7373		

5) 특별교육이수가 가능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시설

지역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주	꿈누리교실(대안교육지원센터)	덕진구 모래내 6길 17	063-253-2279
전주	나~움트리학교	완산구 용호로 149-11	063-236-9801
전주	가람학교	완산구 중화산동 매너머 4길 25-5	063-224-0316
전주	괜찮은학교(전주YMCA)	덕진구 견훤왕궁로 277	063-272-4466
전주	명주골학교	덕진구 백제대로 728	063-247-8311
전주	민들레학교	완산구 황학 6길 3	063-283-1356
전주	선너머학교	완산구 선너머로 54	070-4171-7734
전주	야호학교(특별교육 미운영)	덕진구 진버들 5길 15-1	063-281-6581~3
전주	어울림힐링학교	완산구 따박골 5길 41	063-237-1134
전주	움티학교	완산구 백마산길 6	063-285-4344
전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전북)	덕진구 백제대로 594	063-255-1336
군산	가온누리희망틔움	소룡동 청소년회관로 84	070-8738-1318
군산	내일을여는학교	군산시 대학로 65	063-445-2013
군산	다음세대학교	조촌5길 74-6	063-452-6326
군산	산돌학교	월명안길 1	063-446-4460
익산	꿈너머꿈(익산시청소년수련관)	동서로 476-21	063-838-1700
정읍	녹두학교(샘고을집강소)	벚꽃로 539-5	010-6423-9620
남원	인농학교(남원시청소년수련관)	충정로 72	063-625-3363
고창	책학교해리(책마을해리)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070-4175-0914
고창	희망샘학교	무장면 학천로 267-16	063-562-2811
무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장무로 1559-11	063-323-2287
대구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달성군 국가산단남로 600	053-665-6900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처인구 남사읍 각궁로 252-76	070-4420-1961

4

불복 절차

4-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개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개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
청구기관	-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 청구기관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대상	-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행정청 : 국공립학교장(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장(심의위원회) 등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우편(등기) 등으로 청구
집행정지	-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청구한 뒤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필요
생활기록부 우선 기재	-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생활기록부에 우선 기재하여야 함 ※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조치에 변경된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
학교의 역할	- 행정심판(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문의처	-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법무팀(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063-239-3549)

2. 행정심판 절차

피·가해학생 측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결정(인용, 기각, 각하) ※ 인용 : 처분의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님

가. 가해학생이 본인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1)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함

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1) **위원회가 처분 당사자에게 심판참가 요구(참가요구서, 심판청구서 사본 송달)**

3. 행정심판 심리 절차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	**청구서 접수 답변서 송달(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시스템)**
				↓
행정심판위원회 → 교육지원청,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교육지원청, 청구인
재결(결정)서 송부	←	**심리(서면심리 원칙) 재결(결정)서 작성**	←	**심리기일 통지**

가.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 처분이 변경**된 경우

1) **교육장**은 결정통보서를 수정하여 피·가해학생 측(서면) 및 학교(공문) 통보

2) **학교장**은 처분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기록부 정정 및 변경조치 이행 협조

4. 행정심판시스템 활용

답변서 제출	- 교육지원청은 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행정심판시스템 등록 절차

시스템 접속	→	계정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팩스 전송	→	승인 알림	→	행정심판시스템 로그인

1) **행정심판시스템** : http://jbe.simpan.go.kr/spd

2) **계정신청** : 기관명, 직급,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3)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 전송(044-200-7951)

4) **등록 승인 알림** : 신청 당사자에게 문자로 승인 알림

5) **시스템 접속** : 계정신청 당시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5.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18조~24조

개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
당사자	- 학생 및 법정대리인(원고), 국공립학교장 및 교육장(피고) ※ 사립학교는 학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4-2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1.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

개념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및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재심의를 받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제도 ※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및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청구기관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㊴
청구대상	- 학교장의 전학 및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보호자)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 및 퇴학 조치를 말함
청구기간	-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집행정지	-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30일 동안 집행(효력) 정지
문의처	- 전라북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063-239-3461,3462)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18조의3

개념	- **학생 생활규정 위반 행위를 한 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없음

1) **조치에 따른 불복 방법** : 한 개의 조치만을 내릴 수 있으며 단계적 조치 필요

구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국공립학교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사립학교	민사소송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외부기관 행정심판 및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학교 내 재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나.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개념	-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1) **조치에 따른 불복 방법**

구분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국공립학교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사립학교	민사소송					학생징계조정위원회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5-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및 삭제

1.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절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교육지원청		학 교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공문 발송 ㉘㉚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 기록 ㊲ 조치이행 협조 및 이행결과 보고 ③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기재시기	- 학교는 가해학생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미기재
기재일자	- 가해학생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일자
기재정정	-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선기재해야 하며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
학적변동	- 학적변동(전학, 자퇴 등)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후, 학적 처리
특별교육 기재	- 조치로서의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기재 ※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미기재
유예(휴학)학생	-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복교한 경우 입력된 조치사항 유지
관리(유보)대장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을 송부**하여야 함 ※ 전입교는 관리(유보)대장을 비공개 문서로 관리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1호	2호	3호	7호	4호	5호	6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

2. 가해학생 조치 사항 조건부 기재 유보

가. 조건부 기재 유보 조치

1호		2호		3호
서면사과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나. 조건부 기재 유보 기준(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를 **이행 기간 내에 완료**하고

2) 동일 학교급(초등학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소급 기재 관련

1)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초등학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 방법	- 소급 기재를 해야 할 경우,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모두 입력하고** - 소급 기재되는 조치와 추가된 조치의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함**

라. 유의사항

1) 행정심판(소송) 등의 집행(효력)정지에 따른 기재 유보

-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효력)정지 기간 동안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기재 유보

※ 조치이행 기간 만료 후에 집행(효력)정지 결정이 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함

- **단, 본안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집행(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 결정

2) 기재유보 사항은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하여야 함 ㊲

※ 관리(유보)대장은 입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 : 보존기간(졸업 후 2년)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

3) 동일 학교급에서 최초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1·2·6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호와 2호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 유보하고 6호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3.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1호	2호	3호	7호	**4호**	**5호**	**6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원칙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삭제 불가

※ 졸업과 동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을 말함

가. 기재내용 삭제 절차 및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전담기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삭제 담당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1·2·3·7호 대상자 통보 **4·5·6·8호** 삭제 심의 결과 통보	→	대상자 및 심의 결과 확인 담당자 지정	→	삭제 처리 및 결과 서면보고	→	삭제 결과 최종 확인 및 전담기구 서면통보

※ 서면보고 및 통보의 의미 :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

1) **1·2·3·7호 삭제** : 별도의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 학업중단 학생 :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동급생 기준으로 삭제

2) **4·5·6·8호 삭제**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 **삭제 심의대상 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의대상으로 올릴 수 있음

삭제 심의대상 기준	- 동일학교 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구비서류	- 담임교사 의견서, 조치사항 이수 확인 서류, 본인 의견서(자필) 등 ※ 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심의

- 학업중단 학생 :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삭제 심의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나. 유의사항

1)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유보)대장을 입학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

2) 가해학생 조치 사항 중, **1·2·3·7호는 횟수와 상관없이 졸업과 동시에 모두 삭제**

Ⅱ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1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아동학대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학교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자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됨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임.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 및 지자체 아동학대전담부서로 신고하여야 함

번호	체 크 항 목	■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1-1 아동학대(범죄)의 이해 및 신고 절차

1. 아동학대(범죄)의 이해

가. 관련 용어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사람
성인	- 만 19세 이상인 사람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자 있는 자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교사도 보호자에 포함됨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 -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 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보호자) 및 그 공범을 의미 ※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됨
아동학대 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안처분 :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 보호 및 그 밖의 처분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추행·명예훼손·모욕·강요·공갈·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유기·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 치사·아동학대 중상해·상습범 등	

나. 유사개념

구분	관련법령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18세 미만 아동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족구성원(동거인 및 친족 포함)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한없음	학생

1)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제한

2)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피해아동(보호자)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가능

3) 가정폭력 피해자가 18세 이상(가정폭력법 적용), 18세 미만(아동학대법 적용)

2. 아동학대(범죄) 신고방법 및 절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법률명(약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19구조구급법	- 119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 구조사	
영유아보육법	-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유아교육법	- 유치원 장과 종사자	- 유치원 또는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를 의미
초·중등교육법	-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법	- 학원의 운영자(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봄지원법	- 아이돌보미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신고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누구든지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 상황

정황발견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의심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소재불명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긴급한 경우

-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신고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행위**
고소(고발)	-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

3) 신고 방법 : 112(수사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부서 또는 아이지킴콜앱 등

수사기관	- 국번 없이 112			
아이지킴콜앱	- 앱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다운로드		IOS용	안드로이드용
아동학대 전담부서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063-285-1391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2-1391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63-451-1391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1391
	익산시청 아동복지과	063-843-1391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010-4035-1391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6-1391	**임실군청 여성청소년과**	063-644-1391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063-626-1391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3-1391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063-540-1391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4-1391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063-241-1391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063-584-1391

- **신고 전화(예시)**

① ○○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②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③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④ 아동의 인적 상황은 ····· 입니다. (아동의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⑤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 입니다.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 가능)
⑥ 그 외 당부사항은 ····· 입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 당부 등)

4) 신고 시 유의사항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아동의 안전, 신변확보 및 정보 유출 주의)

※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말고 증거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확보
- 일상적으로 피해아동을 대하고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협조
- 보고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다. 신고 의무 미이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부과방법	-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과태료 부과
부과주체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부과액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2)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예시)

① 담임교사가 학교장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와 학교장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교육(지원)청으로만 보고하고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에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신고기관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라.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13조

1) 신고자 비공개 의무

비공개 의무	- 신고자 개인정보 및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금지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 조치 금지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 검사(경찰서장)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신변안전 조치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보호(순찰, CCTV 설치 등) - 그 밖에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①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②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학교로 신고자를 문의하자 학교(교직원)가 알려준 경우
③ 신고자 추정이 가능한 보고서 등을 비공개 문서로 처리하자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④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⑤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1-2 아동학대 사안처리

1. 사안처리 대응

가. 학교의 역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table>
<tr><td>평상시</td><td>- 매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td></tr>
<tr><td>아동학대 신고</td><td>- 112, 지자체 아동학대전담부서, 아이지킴콜 등으로 신고
- 신고 후 학대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 엄수
- (응급상황)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 분리, 병원 이송 등</td></tr>
<tr><td>사안보고</td><td>-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③ : 기관별 팩스(Fax)번호 13쪽 참조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학교 → 해당기관으로 팩스 보고</th></tr>
<tr><td rowspan="2">가해자</td><td>성인</td><td>교육지원청</td></tr>
<tr><td>교직원</td><td>교육지원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4, 25쪽 참조)</td></tr>
<tr><td>피해자</td><td>특수학생</td><td>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td></tr>
</table>
※ 언론보도 등의 중대사안인 경우 서식 ④를 추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보고</td></tr>
<tr><td>현장조사 협조</td><td>-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 출동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피해아동 면담(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제공 협조
※ 면담(조사) 시간, 장소, 동석 보호자(교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필요
- 피해아동 관련자료 제공 등 조사 협조(필수면담 대상 : 담임교사, 상담교사)</td></tr>
<tr><td>피해아동 지원</td><td>- 취학지원 :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학 지원
- 비밀전학 : 피해아동 및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취학 지원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비밀전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 ⒸⒹⒺ
- 출석인정 : 시설입소나 학대로 인한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 처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등교학습 지원 :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td></tr>
<tr><td>사후관리</td><td>-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및 의심스러운 상황 시 즉시 신고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 심리치료 지원</td></tr>
</table>

나. 피해아동 지원 정책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1)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 역할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위기개입, 상담, 치료,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

순	기관명	관할 시군구	대표번호
1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외 지역	063-283-1391
2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063-715-1371
3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시	063-734-1391
4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063-852-1391
5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063-635-1391

2) 취학 지원

-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선 취학 지원

※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3) 출석인정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8]

- 시설입소나 학대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 처리
- **출석인정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기관)		해당학교
해당학교로 출석인정 요청 공문 발송 Ⓐ	→	출석인정 처리(내부결재) Ⓑ

4) 등교학습 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위탁학생 처리)**
- **등교학습 지원 절차 : 피해아동(보호자)가 직접 지자체 장에게 등교학습 지원 신청** ⒻⒼ

지자체 장		교육감(교육장)		위탁학교		원적교
등교학습 지원 요청 ⒽⒾ	→	등교학습 위탁학교 지정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작성 및 원적교 송부	→	출석인정 및 성적 인정점 부여 등

※ 아동의 의사에 반한 등교학습 지원 요청은 불가하며 관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지원 기간(권장)** :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작성** : 위탁학교에서 작성하여 원적교에 제공

※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5) 비밀전학 ⒸⒹⒺ

- 지자체 장의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에 전출(입)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적극 협조
- 배정 절차

지자체 장	→	교육감(교육장)
비밀전학 요청		전입학교 배정

유의 사항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일체의 자료 비공개 처리 및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 체크 후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 제외 처리**
유출 사례	- 비밀 전학 증빙자료로 피해사실 확인서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정보 노출** - 방과 후 **학교 수혜자가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로 되어 있어** 문자 전송으로 정보 노출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제외	피해아동(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여부 결정

2)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사안처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내용 및 조치 결과를 부모에게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3)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 **피해아동(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으로 종결(⑫ 작성 후, 내부결재)

가해교사 분리	- 피해아동으로부터 가해교사 분리 : **업무(수업)배제, 공간분리, 담임교체 등**
학대여부 판단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하여 현장조사 실시 ※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지자체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학대여부 판단 : 학교(교육지원청) 통보
수사개시 통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 학대행위 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수사개시 통보 ※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육장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24~25쪽 참고)

참고	-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안조사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결정 등에 따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가. 대상 :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 방과 후 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나. 교육시간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본 교육은 개인의무 교육이 아닌 학교장이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임

학교의 장		교육 실시
내부계획 수립(일시, 장소, 교육방법 등)	→	**교육 증빙자료 구비**(내부계획 및 등록부 등)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1) 교육인정 기준 및 교육내용

비대면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시청각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 및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및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자료
교육 내용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보호제도,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 등

2) **인터넷 교육자료 :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	www.gseek.kr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아동권리보장원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

라.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부과대상	-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및 학교의 장**
부과주체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및 교육장 등
부과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2.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가. 대상 : 유치원생,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 등

※ 방과 후 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나. 교육시간 : 유치원장 및 학교의 장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통합 실시 가능**

2)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구성 및 선정

3) 교내외 체험교육(현장학습) 및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또는 부모교육 연계

다. 교육방법 : 대면(인터넷) 강의, 역할극,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등

라. 교육내용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2]**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유치원(8시간)	초등학교(8시간)	중학교(10시간)	고등학교(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 아동학대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 가족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피해자 지원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	-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 (아동학대 포함)

마. 교육자료 : 아래의 교육자료 활용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교육부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3번
아동권리보장원		-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video) - 교육·평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교육·홍보자료 → 동영상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 홈페이지 접속(https://blog.naver.com/lawprobation) - 강의신청 : 학생 대상 아동학대 관련 무료 강의
You Tube 검색	교육부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구요?
	경찰청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이가 위험해요 송(Song) - 우리 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대검찰청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3.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 대상 : 유치원생 학부모,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의 학부모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학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나. 교육방법 : 교육자료(가정통신문 등) 배포, 대면(인터넷) 강의, 시청각 교육 등

1) 입학(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병행 실시**

2)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영상 및 홍보물 탑재**

3)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다.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정의·유형·처벌·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요인 및 결과 등

2)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예방사업 안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3)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바람직한 부모-자녀 맺기 등 부모의 역할 탐색

라. 교육자료 : 아래의 교육자료 활용

<table>
<tr><th colspan="2">기관명</th><th>홈페이지 주소</th></tr>
<tr><td colspan="2">교육부</td><td>-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3번</td></tr>
<tr><td colspan="2">학부모 On누리</td><td>- 홈페이지 접속(http://www.parents.go.kr) → 영상마당
-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검색</td></tr>
<tr><td colspan="2">법무부
준법지원센터</td><td>- 홈페이지 접속(https://blog.naver.com/lawprobation)
- 강의신청 :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관련 무료 강의</td></tr>
<tr><td colspan="2">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td><td>- 홈페이지 접속(http://central.childcare.go.kr)
- 가정양육지원 → 공통부모교육 → 온라인부모교육</td></tr>
<tr><td rowspan="5">You
Tube
검색</td><td>교육부</td><td>-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td></tr>
<tr><td>보건복지부</td><td>-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모의 말과 행동</td></tr>
<tr><td>아동권리보장원</td><td>-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아이의 미래</td></tr>
<tr><td>경찰청</td><td>-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td></tr>
<tr><td>대검찰청</td><td>-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td></tr>
</table>

4. 공공기관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가. 대상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종사자**(유치원 및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정직원, 계약제, 시간제 및 상주인원, 용역직원 등 모든 종사자 포함

나. 교육시간 :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본 교육은 개인의무 교육이 아닌 기관(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임

기관장(공공단체장)	→	교육 실시
내부계획 수립(일시, 장소, 교육방법 등)		교육 증빙자료 구비(내부계획 및 등록부 등)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1) 교육인정 기준 및 교육내용

비대면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시청각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 및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및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자료
교육 내용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보호제도,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 등

2) 인터넷 교육자료 :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	www.gseek.kr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아동권리보장원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

III

관련 서식

[서식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필수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접수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접수 사실 통보 일시 및 통보방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시행여부	확인	
				피해관련 학생/보호자	가해관련 학생/보호자		담당 교사	학교장
2022 -1	2022. 03.03. 11:30	○○○, ○○중 (교사, 학생)	김○○이 정☆☆에게 1월 20일 학교 앞 공원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목격함 등	3.3 14:00, 전화, 문자	3.3. 14:00, 전화, 문자	시행		
						미시행 (피해추정학생 반대의사 표명)		

[참고] 접수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서식 ②]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 확인서

필수

(피해추정학생용)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학교에서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의 사안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2022년 월 일

피해추정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서식 ③]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보고

필수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안 보고

보 고 구 분	□ 최초보고	□ 최종보고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 아님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장	학교장 직인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금품 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가정 폭력	보호자 (성인) 아동 학대	교직원 아동 학대
		○										

※ 중복 체크

학 교 명	○○○학교	교감	성명: ○ ○ ○	교장	성명: ○ ○ ○

관련 학생	피해추정 학생				가해추정 학생			
	학교	학년/반/성별	장애 여부	성명	학교	학년/반/성별	장애 여부	성명
	○○중	3/1/남	○	○○○	○○중	3/1/남	○	○○○
	○○중	3/1/여		○○○	○○중	3/1/여		○○○

발생일시	2022. 00. 00.(월) 00:00	보고	최초	2022. 00. 00.(월)
신고대장접수일시	2022. 00. 00.(화) 00:00		최종	2022. 00. 00.(월)
분리조치 시행여부	시행	2022. 00. 00. ~ 00. 00.		
	미시행	사유 기입(피해추정학생 반대의사 표명, 긴급조치 실시 등)		
사안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된 내용 간략히 기입			

학교폭력 아님 사안	※ 학교폭력 아님 사안 내부결재 일자 기입(2022.00.00.)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내부결재 일자 기입(2022.00.00.)

구분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이행 여부
학교장 긴급조치	1호	1호,2호,3호 등	○
심의위원회 조치	1호	학생 : 1호,2호,5호 등 보호자 : 특별교육 00시간	○

향후 계획	학교	○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서식 ④] 학교폭력(아동학대) 중대사 보고

필수

학교폭력(아동학대) 중대사안 보고 요지

○○학교 ○○ 사안

▣ 사안개요

- 발생일자 : 2022. 0. 00(월), 00:00 ~ 00:00
- 발생장소 :
- 피해추정학생 : ○○학교 00학년 홍○○(남, 여)
- 가해추정학생 : ○○학교 00학년 홍○○(남, 여)
- 가해추정교사(보호자) : ○○학교 담당과목 홍○○(남, 00세)
- 사안요지
  - 00월00일 00시 경,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학교 근처 야산에서 얼굴과 배를 폭행하였음
  - 00월00일 00시 경, 수업시간에 해당교사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바닥 등을 때렸음

▣ 진행상황

- 2022.00.00. ○○을 통해 학교사안 인지
- 2022.00.00. 전담기구 사안조사, 아동학대 전담부서 현장조사, 수사기관 조사 등

▣ 학교 조치사항

- 2022.00.00.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 2022.00.00.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안조사 실시 등
- 2022.00.00. 아동학대 전담부수 현장조사 협조 등

▣ 특이사항

- **○○신문 보도('헤드라인.....', 2022.00.00.)**

▣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2022.00.00. 교육(지원)청 담당자 해당학교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학대피해·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협조(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 관계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서식 ⑤] 긴급조치 보고서

필수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사안 개요	-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구분	학년/반	성명	긴급조치 사항
피해학생			- 1호, 2호, 6호 조치
가해학생			- 1호, 2호, 3호, 5호, 6호 조치
긴급조치일자	년 월 일		
긴급조치의 필요성	(사안의 개요, 심각성, 지속성, 집단여부,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가해학생의 태도 등 고려) (학교장 긴급조치는 피, 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치)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청취일자 : 2022. 00. 00. , 청취방법 : 유선, 내교 등)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	통보일자		
	통보방법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학교장 (서명)

[참고] 피해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16조1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보고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17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

[서식 ⑥] 피해(가해, 목격)학생 확인서

필수

(피해추정, 가해추정, 목격) 학생 확인서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학교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성명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원하는 조치	본인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상대학생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 항목	담임교사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학교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보호자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작성일		2022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⑦] 보호자 의견서

선택

보호자 의견서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학교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관계 유형	부, 모, 조부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 정신적 -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현재 보호자의 심정		(어려운 점 등)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작성일	2022년 ____월 ____일	작성자	(서명)

1. 본 의견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서식 ⑧] 사안조사 보고서

필수

사안조사 보고서(관련학생별 작성)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table>
<tr><td colspan="2">학교명</td><td colspan="3"></td><td>담당자</td><td>○○○</td></tr>
<tr><td rowspan="2">관련
학생</td><td rowspan="2">피해/가해
여부</td><td colspan="2">성 명</td><td rowspan="2">학년/반</td><td rowspan="2">성 별</td><td rowspan="2">비고
(장애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영역 기재)</td></tr>
<tr><td>보호자</td><td>학생</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연락처
및 주소</td><td>학생</td><td colspan="2">010-0000-0000</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우)00000 전주시 00구 000.....
101동 204호....</td></tr>
<tr><td>학부모</td><td colspan="2">010-0000-0000</td></tr>
<tr><td colspan="2">사안
개요</td><td colspan="5">전담기구에서 파악된 전체적인 사안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히 기재</td></tr>
<tr><td rowspan="2">쟁점
사항</td><td>피해</td><td colspan="5">사안에 대한 피해추정 학생 측 입장</td></tr>
<tr><td>가해</td><td colspan="5">사안에 대한 가해추정 학생 측 입장</td></tr>
<tr><td rowspan="5">확인
사항</td><td>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여부</td><td colspan="5">분리시행 : 분리기간(2022. 00. 00.), 분리장소(000)
분리 미시행 : 피해학생 측 거부, 학교장 긴급조치에 따른 격리 등</td></tr>
<tr><td>관계회복
가능성</td><td colspan="5"></td></tr>
<tr><td>수사기관
신고여부</td><td colspan="5"></td></tr>
<tr><td>학교폭력
이력</td><td colspan="5">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td></tr>
<tr><td>긴급조치
여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5">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td></tr>
</table>

[서식 ⑨]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

필수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관련학생별 작성)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개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단히 기입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자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월 일

피해(가해)학생: (인)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하

2 · 관련서식

[서식 ⑩]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필수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4. 심의주제 : 접수번호 2022-00 호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심의내용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6. 심의결과

- 접수번호 2022-00호 사안은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를 요청하였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함

※ 필수 확인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 ○○○	1.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 제출 여부		
	2.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학생 ○○○	1.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 제출 여부		
	2.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학생 ○○○	1. 학교장 자체해결 요청서 제출 여부		
	2.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022년 월 일

[서식 ⑪]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필수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관련학생별 작성)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내용				

2022년 ○○월 ○○일 ○○시 ○○분경 인지되어 접수된 ○○○와 ○○○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특별한 **학교폭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상기 ○○○는 **전담기구 조사 내용에 동의하며, 학교폭력 아님 사안으로 종결해 주시고 차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람)

2022년 월 일

관련학생: (서명)

관련학생 보호자: (서명)

00학교장 귀하

[서식 ⑫]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가해자 (학생이 아닌 자)	성 명 : ○○○ 정보 파악이 어려울 시, 공란으로 남겨둘 것) 전 화 :
피해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성별) 전 화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이 원칙이나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가 피해학생 측의 동의에 의해서 확정되며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가 무효가 되는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본인은(피해학생 측) 본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학교는 본 동의서를 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차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및 각종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022년 ○○월 ○○일

피해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학교명 :

입회인 담당교사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서식 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보호자)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보호자)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우: 00000) 전주시 완산구 00로 00-00		
신청사유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위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신청합니다.				
2022.00.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참고] 위의 서식은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된 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약속한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중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2. 위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학교 접수번호	비고
관련학생	○○중학교	3-1	○○○	○○중 2022-00	예시
관련학생	○○중학교	3-1	○○○	○○중 2022-00	예시

붙임 1. 긴급조치 보고서 1부. (긴급조치를 한 경우) ⑤
2. 피·가해·목격 학생 확인서 1부. (필수) ⑥
3. 보호자 의견서 1부. (선택) ⑦
4. 사안조사 보고서 1부. (필수) ⑧
5.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1부. (필수) ⑩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학기 초에 일괄 동의서를 ⑰ 받지 않은 경우 제출) ⑰-1
7. 기타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끝.

[서식 ⑮]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보호자)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보호자)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학교 2022-00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우: 00000) 전주시 완산구 00로 00-00		
취소사유	- 회복조정 절차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요청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를 요청합니다.				
2022.00.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참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 : 피해학생 측의 취소 의사 확인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안 : 관련학생 모두의 취소 의사 확인
※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청 취소 공문에 첨부

[서식 ⑯]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공문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 공문

○○중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

1. 관련: *개최요청 공문 대호*
2. 2022.00.00일 요청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관련 학생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신고대장 접수번호	비고
관련학생	○○중학교	3-1	○○○	○○중 2022-1	예시
관련학생	○○중학교	3-1	○○○	○○중 2022-1	예시

   나. 취소사유: 관계 개선 및 회복조정에 따른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 등
   다. 행정사항: 학교장 자체 해결 최종보고일(2022.00.00.또는 예정) ③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⑮ 1부. 끝.

[서식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서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 시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서(예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동의여부
방과후 학교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선정 및 운영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보호자(성명,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SMS 문자 서비스	1. 수집이용목적: 학교정보 연락 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휴대전화번호), 보호자(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재학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긴급 및 기타 공지 사항 연락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교육활동 홍보	1. 수집이용목적 :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사, 현수막 등 교육활동 홍보 2. 수집항목 : 학년, 성명, 교육활동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 **재학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됩니다.	□예 □아니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됩니다.	□예 □아니요
스쿨뱅킹	1. 수집이용목적 :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 스쿨뱅킹 거래내역 중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협**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졸업 후 **5년**(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아니요
돌봄교실	1. 수집이용목적: 돌봄교실 참가학생 선정 및 운영 2. 수집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돌봄교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학생증 발급	1. 수집이용목적: 학생증 발급 2. 수집항목: 사진,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재학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학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 □아니요
졸업앨범 제작 (졸업생)	1. 수집이용목적: 졸업앨범제작 2. 수집항목: 사진,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졸업앨범 제작(배포) 완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졸업앨범에서 학생 정보 누락 및 졸업앨범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우유급식 신청서	1. 수집이용목적: 학교 우유급식 신청 2. 수집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우유급식 실시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우유급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Wee센터 상담	1. 수집이용목적: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서비스 지원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상담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업무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동의여부
장학금 지급	1. 제공받는자: **장학금 지급 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장학금 지급** 3. 제공항목: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4.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장학금 신청/선정/수령 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금 대상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보험가입, 학교안전 공제회	1. 제공받는자: **해당 보험사, 학교안전공제회**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각종 행사 참여 시 보험 가입** 3. 제공항목: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학교안전공제회에는 제공하지 않음) 4.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현장체험 학습기간, 수학여행기간 등**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보험업법에 의해 해당 보험사에만 제공되며, 학교안전공제회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예 □아니요
적성검사	1. 제공받는자: **적성검사 단체**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적성검사** 3. 제공항목: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4.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적성검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1. 제공받는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련 우편 송달** 3. 제공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4.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적 절차 마무리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 00학년 00반 00번 ○ ○ ○ (서명)

※ 만 14세 미만 학생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 ○ ○ ○ (서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2. 00. 00.

○○학교장 귀하

관계법령에 의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 아래의 업무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의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합니다.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용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1. 수집이용목적: 건강조사, 건강상태 파악 및 응급환자 관리를 위함 2. 수집항목: 학생개인질병 및 건강상태, 건강조사, 보호자연락처, 보호자 부재 시 연락처, 보호자명, 취학 전 접종내역(신입생만) 3. 이용 및 보유기간: 재학 기간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건강검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생활 기록 (NEIS 입력)	1. 수집이용목적: 학교생활 기록 2. 수집항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사항 3. 이용 및 보유기간: 준영구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학교생활 기록 (학생선발, 전출)	1. 수집이용목적: 학생선발, 전출처리 2. 수집항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사항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 선발 시, 학생 전출 시 4. 제공받는 자: 선발학교, 전출학교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0조의6
보호자 상담신청	1. 수집이용목적: 보호자와 교사의 상담진행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연락처, 학생과 관계) 3. 이용 및 보유기간: 재학 기간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도서관 이용	1. 수집이용목적: 학교 도서관 이용 2. 수집항목: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재학 기간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8조
교육비 지원	1. 수집이용목적: 교육비 지원 2.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사회보장자격 결정정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인터넷 통신회사 가입정보 및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보호자성명 및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교육비 지원 기간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60조의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학교폭력 확인	1. 수집이용목적: 학교 폭력 확인 2. 수집항목: 성명, 학년, 반, 성별, 연락처, 사안확인용 정보, 목격학생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병역자료 제공 (18세이상)	1. 수집이용목적: 병역자료 제공 2. 수집항목: 학교생활기록부 3. 이용 및 보유기간: 제출 요청 시 4. 제공받는 자: 병무청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제11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학교안전 공제회	1. 수집이용목적: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공제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청구 시 4. 제공받는 자: 학교안전공제회 관계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식 ⑰-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

[참고]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련 자료 우편송달
보유 및 이용기간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00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계좌번호			
위촉기간	2022년 00월 00일 ~ 2022년 00월 00일			

상기 본인은 OO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OO 교육장 귀하

2 · 관련서식

[서식 ⑲]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필수

위 촉 장

○○○

귀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2000년 0월 0일 ~ 2000년 0월 0일)

2022년 00월 00일

00교육지원청 교육장 000

[서식 ⑳]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참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연락처	위촉기간	자격
1	○ ○ ○	○○교육지원청 ○○과		2022.00.00.~ 2024.00.00	위원장 (0000과장)
2	○ ○ ○	○○○학교			교 장(교감)
3	○ ○ ○	○○○학교			교 원
4	○ ○ ○	○○○학교 ○학년			학부모
5	○ ○ ○	○○○학교 ○학년			학부모
6	○ ○ ○	○○○학교 ○학년			학부모
7	○ ○ ○	○○○학교 ○학년			학부모
8	○ ○ ○	○○경찰서			외부위원 (경찰)
9	○ ○ ○	○○○병원			외부위원 (의사)
10	○ ○ ○	○○상담소			외부위원 (상담사)

[서식 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제00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

회의 장소				
대기 장소	**피해추정 학생 측**		**가해추정 학생 측**	

3. 안건 :

4. 사안개요(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피해학생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를 ㉒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OO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요청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OO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의 개최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㉒] 아동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필수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참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추정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시 : 2022. 00. 00.(월)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의 정보를 기재

일자	기관명	성명(전문가)	연락처(전문가)
‘22.00.00			

※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일자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여부
‘22.00.00	희망, 미희망

※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학생 모두 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2022년 월 일

피해추정학생 : (서명)

피해추정학생 보호자 : (서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2. 관련서식

[서식 ㉓] 서면 진술(의견)서

필수

서면 진술(의견)서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2022년 월 일

보호자 (서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귀중

[서식 ㉔] 기피 신청서

필수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00. 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귀중

[서식 ㉕] 심의(소)위원회 등록부

필수

2022학년도 제○○회 심의(소)위원회 등록부

2022. ○○. ○○.(화)

순	위원명	서명	비 고
1			위원장
2			
3			
4			
5			
6			
7			
8			
9			
10			
재 적 위 원 수		명	
출 석 위 원 수		명	
불 출 석 위 원 수		명	

[서식 ㉖]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고(서식) 필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고(서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사전 협의 개요

일시	2022.0.0.(수) 14:00	참석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
장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장학사 ○○○)

❍ 사안번호: 전주 2022-00호, 군산 2022-00호

최초 개최 요청교	○○중학교	개최 요청 접수일	2022.00.00.(월)

❍ 관련학생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성별	학생성명	교육지원청(담당자)
피해추정	○○중학교	00/0	남여	○	○○교육지원청 (장학사 ○○○)
피해추정					
피해추정					
가해추정					
가해추정					
가해추정					

❍ 사전 협의사항

내용		협의 결과	비고
주관교육지원청 선정		○○교육지원청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00.00.(수) 14:00 장소: ○○중학교 수기당	13:30부터 사전회의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총 10명 (학부모 4명) 전주: 교원1, 경찰1, 내부위원1, 학부모2 군산: 교원1, 경찰1, 전문위원1, 학부모2	
위원장 지명		○○교육지원청 위원 중 교육장이 지명	
공동심의위원회 간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	
공동심의위원회 서기		각 교육지원청별 1명 회의 참석	
개최 및 참석통보서 발송방법	학부모(등기)	교육지원청별 개별 발송	공동심의위원회 개최로 타 교육지원청에서 참석통지서가 발송됨을 반드시 사전 안내
	학교(공문)	교육지원청별 개별 발송	
	위원(등기)	교육지원청별 개별 발송	
심의위원회 인력지원		관련교육지원청 10명 -주관교육지원청 요청 시 관련교육지원청 인력 출장 협조	
그 외 필요 사항			

[서식 ㉗]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의결서 필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의결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렸으니 **00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학생은 7일, 가해학생은 14일 이내 해당조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번호: 2022-00호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개최사안			

구분	학생			조치결정(의결) 사항	
	학교명	학번	성명		
피해	000학교	0000	000	제16조 제1항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					
가해	000학교	0000	000	본조치	제17조 제1항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추가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00시간(회기), 보호자 00시간(회기)

위 결정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동의합니다.

2022. 00. 00.

직	성 명	서명	직	성 명	서명
(소)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서식 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필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가 결정된 바, 관련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학생 : 00학년 00반 ○○○
2. 가해학생 : 00학년 00반 ○○○
3. 사안개요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해당되는 사안을 기입
4. 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2년 00월 00일(조치결정 통보일 아님)
5.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① 피해학생 :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00회기 등
② 가해학생 : 제17조 제4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등 - 추인여부 : 추인, 일부추인, 미추인 (일부 추인된 경우 추인된 조치만 기재)
5. 의결 및 집행요청 사항(학교장 긴급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입)
①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00회기 등 ② 가해학생 조치 : 제1호 서면사과(2022.4.30.까지 이행) - 제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2022.3.14.~12.31.)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2022.4.30.까지 이행) - 제6호 출석정지 10일(학교장 긴급조치 5일 + 심의위원회 조치 5일) · 가해학생 추가 조치 :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00시간, 심리치료 00회기 · 가해학생 보호자 조치 : 제17조 9항 특별교육 00시간
6. 결정의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가 하급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전학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가해학생의 변화를 위해 교육적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하는 바임
【행정심판(소송) 안내】 ① **피해학생** :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가해학생** :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③ **행정소송** : 피·가해학생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 TEL 063-000-0000)**

2022년 00월 00일**(내부결재일자 기입, 00쪽 참조)**

○○교육지원청 교육장(직인)

[서식 ㉙] 조치결정 유보 통보서

필수

조치결정 유보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29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결정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조치 유보 대상학생	○○학교	0학년 00반	김○○
조치결정 유보사유	- 피해·가해행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심의의 공정성 및 조치의 형평성을 위해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심의위원회 재개최 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 교육공동체 회복 및 관계개선을 위한 회복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양측이 동의하였으므로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심의위원회 재개최 후, 회복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담당자 : ○○○, TEL 063-000-0000)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2022. 00. 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인)

[서식 ㉚]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및 조치이행 요청 공문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및 이행 요청 공문

○○교육지원청

수신 ○○중학교장
(경유)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이행 안내

1. 관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과	비고
피해학생	○○중학교	3-1	○○○	[붙임] 참조	예시
가해학생	○○중학교	3-1	○○○	[붙임] 참조	예시

3. 교육장 조치 결정일(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입된 날): 2000년 00월 00일

붙임 조치결정 통보서 1부. 끝.

[참고] 교육장 조치결정일(내부결재일)은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입된 날이며 생활기록부 기재일자로 활용

[서식 ㉛]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명단 보고 공문

필수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학생 명단 보고 공문

○○교육지원청

수신 ○○중학교장
(경유)
제목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학생 명단 보고

1. 관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1항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중학교	3-1	○○○	4호, 5호 등	단순거부, 연락두절 등

끝.

[참고] 최대 3개월 이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생 명단을 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은 21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부(기피)에 따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서식 ㉜] 학생 특별교육 신청 공문

필수

학생 특별교육 신청 공문 (해당학교 → 해당기관)

○○중학교

수신 ○○○○ 기관
(경유)
제목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9항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 기관에 본교 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을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해학생 특별교육

	유형	소속학교	학년반	성별	이름	조치결과
가해학생 정보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생비행 등	○○중학교	3-1	○○○	○○○	특별교육 00일, 00시간

※ 학생비행 :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으로 일반인 폭행, 흡연, 절도, 지시 불이행 등

나. 보호자 특별교육

	자녀학교	관계	이름	조치결과	비고
보호자 정보	○○중학교	(조)부 (조)모 시설장 등	○○○	특별교육 00시간	

붙임 1. 조치결정통보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등) 1부.
2. 학부모 동의서 1부.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㉝
3. 특별교육 신청서 1부. ㉞ 끝.

[서식 ㉝] 학생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서 필수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동의서

학교 :

학번 :

성명 :

귀하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 결정되었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특별교육 조치 결과 : 5일(2022. 00. 00. ~ 2022. 00. 00.) 또는 00시간
2. 특별교육 이수 기관 : ○○○ 기관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로 00 (전화 : 063- 000-0000)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 ○ ○ ○ (인)

학 생 : ○ ○ ○ (인)

2022년 00월 00일

○○중학교장

[서식 ㉞] 특별교육 신청서

필수

접수번호	※ 센터에서 기재

특별교육 신청서 (학교 담당교사가 작성)

특별교육	☐ 보호자 동반 여부 : (○, X) ☐ 교육시간 : 학생_____(일) 시간 / 보호자_____시간					
희망일	☐ 희망일 : 2022년 00월 00일 ~ 2022년 00월 00일					
대상학생	학 생 명	(남/여)	학 교		학교 학년 반	
	보호자명	(남/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주 소					
조치 내용	위원회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유형	학교폭력(집단따돌림, 폭행 등), 교권침해, 흡연, 절도, 일반인 폭행 등				
	사안내용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구체적으로)				
	조치결과	학생 특별교육 00일(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00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공

1. 수집 목적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지원
2. 수집 항목 : 신청 대상의 성명, 소속, 성별, 주소, 본인·보호자 연락처, 프로그램 희망 일시, 조치 내용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종결 시까지 이용, 보관기간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	☐ 학교 ☐ 가정 ☐ 기타( )	담당교사	(인)
연락처	☐ 학교 : 063-000-0000	보호자	(인)
	☐ 담당교사 : 063-000-0000	학 생	(인)

2. 관련서식

[서식 ㉟]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검사) 신청 공문 필수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검사) 신청 공문 (해당학교 → 상담기관)

○○중학교

수신 ○○○○ 상담기관
(경유)
제목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검사)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담기관에 본교 학생의 심리상담(검사)을 신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해당학생 정보	유형	소속학교	학년반	성별	이름
	피해/위기학생	○○중학교	3-1	남/여	정○○

붙임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검사) 신청서** 1부. ㊱ 끝.

필수

피해(위기)학생 심리상담(검사) 신청서

학생 정보	학교명	학년/반	성별	성명	연락처
					☐ 학 생 : 010-000-0000 ☐ 보호자 : 010-000-0000
	주소	우_____ 전주시 덕진구 홍산로 111			
학교 정보	담당교사		연락처		
	○○○		☐ 전 화 : 063-000-0000 ☐ 팩 스 : 063-000-0000		
유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고위험군 학생 등				
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구체적으로)				
희망 기간	2021년 00월 00일 ~ 2022년 00월 00일				
특이 사항	학생의 현재 상태, 과거 상담경험 등				

위와 같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검사)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기관 귀하

[서식 ㊲]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

학년	반	번호	성명	조치 일자 ①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여부 ②	이행 여부 (1,3호만 기입) ③		전담기구 삭제 ④	
							완료일	기재사유	심의결과	삭제시기
3	1	25	○○○	2022. 00.00.	1호	유보	2022. 00.00.			
				2022. 00.00.	1호	유보 기재		조치 미이행	졸업과 동시삭제	2023.2.
				2022. 00.00.	1호	유보 소급기재		조치사항 재발	졸업과 동시삭제	2023.2.
				2022. 00.00.	3호	유보	2022. 4.30.		졸업과 동시삭제	
				2022. 00.00.	3호	유보 기재		조치 미이행	졸업과 동시삭제	2023.2.
				2022. 00.00.	3호	유보 소급기재		조치사항 재발	졸업과 동시삭제	2023.2.
				2022. 00.00.	4호	기재			심의 후 삭제	2023.2.
				2022. 00.00.	5호	기재			심의 후 미삭제	2025.2.
				2022. 00.00.	5호	기재			심의대상 아님	2025.2.
예시) 3학년 A학생이 1호, 4호 조치를 받은 경우				2021. 4.1.	1호	유보	2021. 4.3.		졸업과 동시삭제	2023.2.
				2021. 4.1.	4호	기재			심의 후 삭제	2023.2.

[참고]

① 조치일자 =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날(생활기록부 기재일로 활용)

② 생활기록부 기재여부

- 유보 : 1,2,3호는 조치이행 기간 내에 완료하거나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이행하고 동일학교급 (초등학생은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조건부로 기재 유보
- 소급기재 : 이행 완료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소급 기재

③ 이행여부 : 1, 2호, 3호 조치만 기입(조치이행 완료일 명시)

- 기재사유 :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했으나 조치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재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 소급기재

④ 전담기구 삭제

- 1,2,3,7호 : 별도의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 4,5,6,8호 : 졸업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미삭제 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삭제심의대상 : 동일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치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만 해당

[서식 ㊳] 회복(분쟁)조정 신청서

필수

회복(분쟁)조정 신청서

기관명		담당자		
신청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구분		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연락처	
당사자	당사자 A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당사자 B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사안 내용	**사안내용은** 보다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쟁점 사항	당사자 A	**쟁점사항은**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당사자 B	**쟁점사항은**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현재 상태	당사자 A						
	당사자 B						
특이사항	경찰신고 언론보도 여부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	- 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2.00.00. - 심의위원회 개최 유보일 : 2022.00.00. - 피해학생 조치 : 1호, 2호, 6호, 가해학생 조치 : 3호 , 4호, 5호 ※ 개최 예정이면 예정일 기입					

[서식 ㊴]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필수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보호자 정보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자택			
			H P			
	주소	우) _____				
	학생 정보	성명	학교명	학년	반	성별
피청구인		학교명	소재지(시군구 읍면동)			학교장 성명
전(퇴)학 조치를 받은 날		년 월 일				
청구 사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 불복절차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_239-3549)

참고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지방자치단체 → 피해아동 재학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기관)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피해아동 출석인정 협조 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명: ○○○(00년 00월 00일생)
나. 보호기관명: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전주시 완산구 소내)
다. 쉼터 입소일: 2000년 00월 00일
라. 출석인정기간(결석일): 2000년 00월 00일 ~ 아동 출석 시 까지
마. 결석사유: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바. 요청사항: 보호기간 출석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사. 출석인정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끝.

참고

출석인정 내부결재 기안문 (피해아동 재학 학교)

○○○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피해아동 출석인정 관련의 건

1.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1234(2021.00.00.)
2. ○○기관에서는 본교 피해아동을 ○○쉼터에 보호 중에 있으며 보호 기간 중에 발생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피해아동의 결석을 아래와 같이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학생명: ○○○(00년 00월 00일생)
   나. 보호기관명: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전주시 완산구 소내)
   다. 쉼터 입소일: 2000년 00월 00일
   라. 출석인정기간: 2000년 00월 00일 ~ 아동 출석 시 까지
   마. 결석사유: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바. 요청사항: 아동 출석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사. 출석인정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붙임 ○○기관 출석인정 요청공문 1부. 끝.

참고

비밀전학 협조 요청 공문 (지방자치단체 → 피해아동 재학 학교)

※ 관할교육지원청으로도 공문 동시 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의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따라 귀교의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전학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 드리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배정 요청학교	비고
○○학교	○○/○	○○○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보호	○○○소재 ○○○학교	비밀유지

붙임 1.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견서 1부.
2. 피해아동 비밀 전학 요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작성) 끝.

참고

비밀전학 시행 내부결재 기안문 (피해학생 재학 학교)

○○○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대피해아동 비공개 전학 관련의 건

1.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1234(2021.00.00.)
2.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 됨에 따라 해당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명	학년/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교	○○/○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소재 ○○○학교	비밀유지

붙임 1. 지자체 비밀전학 요청 공문 1부.
2. 지자체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서식 Ⓔ] 비밀전학 시행 공문(아동학대)

참고

비밀전학 시행 공문 (교육지원청 → 피해아동 전입 학교)

○○○ 학교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학대피해아동 비밀 전학 협조 요청

1. 관련: ○○○○○○기관-1234(2022.00.00.)
2. ○○○○○○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피해아동을 귀교로 비밀전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 드리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명	학년/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일자	비고
○○학교	○○/○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2022.00.00.	비밀누설 금지

붙임 1. 지자체 비밀전학 요청 공문 1부.
2. 지자체 상담소견서 1부. 끝.

[서식 Ⓕ] 등교학습 신청서(아동학대)

참고

등교학습 신청서 (피해아동 → 지자체)

※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

등교학습 신청서

주 소			
현재 학교		학 년	○학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신청 사유(예시)

본인은 ○○지역의 조부모집(또는 ○○쉼터)에서 머무르며 인근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므로,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 (서 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 등교학습 의견 제출서(아동학대)

참고

등교학습 의견 제출서 (학교, 보호시설 등 → 지자체)

※ 등교학습 지원 신청 아동에 대한 학교 및 보호시설 담당자 의견 제출

등교학습 지원 의견 제출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재학교		학 년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 제출인	성 명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 제출 사유(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등교학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 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 관련서식

[서식 Ⓗ]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아동학대)

참고

등교학습 의견 요청서 (지자체 → 교육지원청)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재학교		학 년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 제출 사유(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등교학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 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 등교학습 지원 요청 공문(아동학대)

참고

등교학습 지원 요청 공문 (지자체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등교학습 지원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생의 인적 성정과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 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학교	학년/반	성별	성명	등교학습 지원학교	비고
○○학교	○○/○	○○○	○○○	○○소재 ○○학교	비밀누설 금지

붙임 1. 등교학습 지원 신청서 1부. Ⓕ
2. 등교학습 의견 제출서 1부. Ⓖ
3.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1부. Ⓗ 끝.

Ⅳ

부록

1

회의록 시나리오

□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시나리오(예시)

※ [주의]
본 시나리오는 심의위원회 회의 진행과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사안의 특성,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학년도 제○○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회의록(예시)**

○○교육지원청

개최일시 : 2022 . 00. 00.(요일) 00:00
개최장소 : ○○ 회의실 등

□ **심의 안건**

1. 접수번호 2022 - 00호 ○○학교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
2. 접수번호 2022 - 00호 피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추인의 건**

※ 가해학생 긴급조치 추인의 건은 본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심의

▶ **간사**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입니다.
✔ 위원장님의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학년도 제00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의 심의할 안건은**

1. 접수번호 2022-00호 ○○학교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과
2. 접수번호 2022-00호 피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추인의 건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심의·의결하고 긴급조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심의

▶ **위원장**

✔ 간사께서는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본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회의에서 제척되며 관련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한 심의(소)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피가 결정된 위원은 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중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관련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기피 신청이 되었다거나 스스로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학생(보호자)이 서면 제출 및 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위원장은 정회 후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함

※ 성원 유지 : 제척, 회피 시에도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 **위원들**

✔ 없습니다.

※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힌 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주의사항 전달

▶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본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둘째, 본 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학교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넷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거 본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가해학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하여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을 결정하고 회의 시작 시, 청취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위원장**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피해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받고 있는 상담기관의 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 이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를 확인하였고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의 (심리상담전문가를 **직접 출석시켜 또는 심리상담전문가 소견서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지원청 내 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 이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를 확인하였고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위센터 등)의 (심리상담전문가를 **직접 출석시켜 또는 심리전문가 소견서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피해·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심리상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출석한 경우)
심리상담전문가가 제출한 서면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서면 제출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이 없는 경우>

✔ 이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안 보고(학교장 긴급조치 보고 포함)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간사께서는 금일 심의할 사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22-0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 사안개요
 - 피해 관련 학생: ○○ 중학교 1학년 김○○
 - 가해 관련 학생: ○○ 중학교 1학년 김○○
 - 발생일시: 2022년 00월 00일( )
 - 발생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접수)일: 2022년 00월 00일( )
2. 사건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
3. 쟁점사항
 - 피해 관련 학생 주장:
 - 가해 관련 학생 주장:
 - 목격학생 의견:
 - 학교 측 의견: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 및 학교장 긴급조치 실시 여부
5. 특이사항: 언론보도, 신고여부,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진단서 등

✔ 이상으로 2022-0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금일 사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사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논의 사항 협의 시작>

✔ 위원님들께서는 관련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관련 학생 측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 **위원장**

✔ 먼저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기피 신청을 한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기피 여부 협의 :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당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기피 여부 협의 : 기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당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피 신청은 기각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없으시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 위원회의 목적은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피해 관련 학생 측 주장 확인 (특히 가해 관련 학생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확인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 질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학생 및 보호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일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학생 및 보호자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549)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가해 관련 학생 측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 **위원장**

✔ 다은은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기피 신청을 한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기피 여부 협의 :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당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기피 여부 협의 : 기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당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피 신청은 기각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없으시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 위원회의 목적은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가해 사실 확인 (특히 피해 관련 학생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

<위원 질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학생 및 보호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일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학생 및 보호자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549)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인 진술(심리상담전문가, 해당학교 교사 등)

- **심리상담 전문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반드시 심리전문가 의견 청취(출석 또는 서면)
- **해당학교 교직원** : 사안관련 사실, 교우관계, 피해정도 및 현재 상황, 학교생활, 반성정도 등을 확인
- **청소년 관련 전문가** : 관련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심리 상태 등을 확인
- **특수교육 전문가** : 장애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 **다문화교육 전문가** : 다문화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 **성폭력 분야 전문가** : 성 사안을 이해하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확인
- **사이버폭력 분야 전문가** : 사이버폭력 사안의 특성 등을 확인

※ 유의사항: 참고인은 의견 진술을 한 후에 즉시 퇴장, 조치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 금지

▶ **위원장**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경우)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기관 ○○선생님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심리상담전문가 의견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리상담전문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다음은 학교 담당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학교 ○○선생님 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사안 여부 협의

▶ **위원장**

✔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인정 사안) → 피해·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 진행

-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된 행위

(학교폭력 아님 사안) → 조치 결정 심의 없이 회의 종료

※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추인 부결

-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 학교폭력 아님 결정
-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 증거불충분 사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
-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혐의 없음 사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

(조치유보 사안) → 심의위원회 재개최(회복조정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치)

- 유보 사유 : 양측의 동의로 회복조정 진행, 수사기관 조사 진행 중인 사안 등

(학교폭력인 경우)

▶ **위원장**

✔ 금일 상정된 안건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는 신체(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피·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 **위원장**

✔ 금일 상정된 안건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는 신체(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간사는 심의(소)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유보를 결정한 경우)

▶ **위원장**

✔ 양측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회복조정이 신청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치를 유보하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한 후,** 회복조정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간사는 다음 위원회 때 회복조정 결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조정을 신청한 경우)**

✔ 현재 사안의 피·가해학생 의견이 엇갈리고 사실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수사기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조치를 유보하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한 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간사는 다음 위원회때 수사기관 조사 결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간사는 심의(소)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 **위원장**

✔ 먼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은 현재 피해학생에게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16조 제1항 제0호로 결정되었으며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가해학생 조치 유의사항>

호	유형	내용
1	서면사과	-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적는 조치 ※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원, 소년원 입교 등)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격리 조치 아님)
3	학교에서의 봉사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 방법을 선정 - 유형 : 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원, 소년원 입교 등)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4	사회봉사 (출석인정)	-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의 봉사 - 1365 나눔포털, VMS, DOVOL 등에 등록된 기관 활용
5	특별교육 (출석인정) 심리치료 (출석인정)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동시에 내릴 수 없음 ※ 심리치료 :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
6	출석정지 (출석미인정)	-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함(시험기간 등 제외)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니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출석정지 기간 내에 자율학습, 가정학습, 위탁교육 등 가능하나 출석 미인정 결석 처리됨
7	학급교체	- 격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	전학	-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 요청 - 교육장은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원칙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분리 배정 ※ 피해학생을 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을 후 배정함 - **참고사항** 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②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 불가 ③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 취소 및 재배정 요청 불가 ※ 2022년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9	퇴학	- 해당학생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 마련

<가해학생 조치 부과 방법>

(조치이행 완료기한 반드시 명시) → 1호, 3호(00.00.까지 이행)
(조치이행 기간 반드시 명시) → 2호(00.00.부터 ~ 00.00.일까지)
(일 단위 조치) → 5호 특별교육이수, 6호 조치 → 00일
(시간 단위 조치) →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 00시간
(회기 단위 조치) → 5호 심리치료, 원 조치에 추가되는 심리치료 → 00회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기본 판단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1호	**서면사과**	1～3점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가해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부가적 판단요소	(선도가능성 고려) → 생활태도, 학교폭력 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치 경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조치 가중 가능					
유의사항	(개인별 기준 적용) →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개인별로 세부기준 협의(적용) (판정점수 결정) → 기본 판단 요소별로 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합계 점수에 따른 평균점수 산출 금지)					

▶ **위원장**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협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분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집단으로 행해졌고 흉기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들**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심각성은 매우 높음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학교폭력이 장기간에 반복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지속성 높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그러나 학교폭력이 장기간이지만 확인된 학교폭력이 2건이고 그 발생 간격이 크므로 **지속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 표결 결과 지속성에 대해 높음 3명, 보통 5명으로 **지속성은 보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화해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아닌 각 기본 판단요소별 협의를 통해 평가하여야 함

▶ **위원장**

✔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심각성 00점, 지속성 00점, 고의성 00점, 반성 정도 00점, 화해 정도 00점, 총 00점으로 제0호 조치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가해학생에 대한 **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와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와 5호 조치는 단독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먼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제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 제2호 조치에 대해서 출석위원 00중 00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호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조치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조치**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 제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서 출석위원 00중 00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5호 심리치료 조치에 대해서 출석위원 00중 00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5호 심리치료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의 경감과 가중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본 요소 판정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0호로 결정되었지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 따라 경감,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판정 점수대로 조치할 경우)

▶ **위원장**

✔ 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 총 00점으로 제0호 조치입니다.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의 개전의 가능성이 낮고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경감 및 가중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판정 점수 조치보다 가중할 경우)

▶ **위원장**

✔ 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 총 00점으로 제0호 조치입니다.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해당되므로 제0호 조치로 가중**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판정 점수 조치보다 경감될 경우)

▶ **위원장**

✔ 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 총 00점으로 제0호 조치입니다.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이 처음이고 그동안의 생활태도로 보아 충분히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바, **제0호 조치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학교장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및 추인 협의

▶ **위원장** **(법령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만 해당)**

✔ 다음은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해학생 긴급조치 추인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00-00호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장 긴급조치로 제6호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습니다.

▶ **위원장**

✔ 학교장 긴급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로 금일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를 고려하여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 경우)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출석위원 00명 중, 00명이 동의하여 과반이 동의하였으므로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 안건은 가결**되었으며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을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 한 경우)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출석위원 00명 중, 00명이 동의하여 과반이 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추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결정

▶ **위원장**

✔ 이번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추가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간사는 우리교육청의 추가되는 특별교육 이수 기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우리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이 2~4호, 6~8호 조치를 받을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추가되며 우리교육청 권장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내려야 합니다.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4시간 이내			5 ~ 8시간 이내		

✔ 본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조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 시간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시간을 포함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기관에서만 특별교육이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사안 특성 및 기관(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먼저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0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0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금일 심의한 사안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022 - 0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0호 00시간(일, 회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0호 00시간(회기), 제0호 00일로 결정되었으며
추가조치로 학생 특별교육이수 00시간(심리치료 00회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0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간사는 심의(소)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피해학생은 7일, 가해학생은 14일 이내 본 조치가 통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검토위원 선출

▶ **위원장**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두 분을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선정하고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검토 위원에게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2-00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했던 사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있는 경우 보고

▶ **간사**

✔ 2022-00호 ○○학교 ○○○학생의 사안은 지난 00월 00일에 발생하여,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장 해결 동의서를 00월 00일 날 받아 학교장 자체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차후, 가해학생 측이 피해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사안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고 차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전담기구의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00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9:00 폐회)

작성일: 2022. 00. 00.

검토위원 (서명)	○○○	△△△

재적위원 ○○명	출석위원 ○○명	참고인(기타참가자) ○○명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심리상담전문가 ○ ○ ○ 담임교사 ○ ○ ○ 책임교사 ○ ○ ○ 상담교사 ○ ○ ○ 목격학생 ○ ○ ○

2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1. 3. 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 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④ 삭제 <2019. 8. 20.>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7688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의 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0. 2. 25.>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및 ㊾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1789호, 201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육환경변화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집필진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한상균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시현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검토진	강부경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영주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임영옥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유선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전은영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원동식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연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장현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황은우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박미경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이윤재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혜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임현주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강양숙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최수영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유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서민이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이원범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장은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서진경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신다윤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진훈석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최규정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노호승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강신규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한승규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이정욱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양신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김정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김잔디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전우진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백정화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박현규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엄재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전슬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송미경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이영임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최낙훈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장효성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김은희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이찬경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이진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이승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

인　쇄 | 2022년 3월
발　행 | 2022년 3월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민 주 시 민 교 육 과